

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

2023. 8.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화순군은 「지방자치법」 제185조·제190조에 따른 道 정기종합감사를 '20년 4월 이후 받지 아니하여 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
- 「조직·인사», 「예산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화순군 본청, 직·사업소, 읍·면에서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조직·인사관리,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3. 3. 29.부터 4. 6.까지 감사인원 17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23. 2. 28. 기준)

인 구	면 적	조 직
61,976명 (전남의 3.4%)	787km ² (전남의 6%)	○ 2실,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3읍면, 1의회 ○ 행정구역 : 1읍 12면

※ 직속기관(2)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 사 업 소(2) :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2.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 '23. 2. 28. 기준)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정원	775	1	733	1	40
현원	759	1	718	1	39
증감	△16	-	△15	-	△1

3.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 '23. 2. 28. 기준)

구분	2021	2022		2023		구분	2021	2022		2023. 2.	
	본 예산	본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본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최종 예산	최종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최종예산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계	6,123	6,457	334 (5.5)	7,506	1,049 (16.2)	계	7,572	8,612	1,040 (13.7)	7,506	△1,106 (△12.8)
일반 회계	5,431	5,872	441 (8.1)	6,413	541 (9.2)	일반 회계	6,695	7,900	1,205 (18.0)	6,413	△1,487 (18.8)
특별 회계	692	585	△107 (△15.5)	1,093	508 (86.8)	특별 회계	877	712	△165 (△18.8)	1,093	381 (53.5)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 총 81건의 위법·부당사항, 모범사례를 확인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가+나+다+라)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건)											모범 사례 (다)	사전 컨설 팅 (라)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B+C +D+E+F)	시 정						재정상 처 분 외 시 정 (b)	주의 (B)	개선 (C)	권고 (D)			통보 (E)	경고 (F)
					계 (A =a+b)	재정상 처분(건/백만원)												
					소계 (a)	회수	부과 추징	감액	기타									
81	21 (70명)	1 (1명)	20 (69명)	58	22 (510)	11 (510)	3 (104)	5 (219)	1 (132)	2 (55)	11	27	2	-	7	-	2	-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 및 처분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p>▶ 계약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공사·용역·물품 8,046건(3,358억원), 관급자재 6,523건(1,616억원) 등 총 14,569건(4,974억원)의 계약대장 미작성으로 검수관리, 자산등록 등 절차 미이행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훈계 요구, 미작성된 계약대장 14,569건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시정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요구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2단계 경쟁 회피 및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훈계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요구 <p>▶ 세외수입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는데도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인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약 9억원의 부과 기회 상실 등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관련자 경징계 및 훈계 요구 <p>▶ 공사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훈계 요구,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하도록 시정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요구
--

2. 처분요구 요약

① 건강검진 사유 공가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실 등 33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총 1,597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의 공가 사용을 허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등에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등에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 18개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총 29명이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 허가를 득한 후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미실시했는데도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공가로 그대로 처리하여 연가보상비 약 315만원 부당 집행
- ※ ('20년) 5회, ('21년) 13회, ('22년) 11회

☞ 부당 지급된 연가보상비 315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건강검진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②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1. 공무직 신규 채용 및 전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104명에 대해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관리 운용 중
-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등에 인사부서는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해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목적 등의 적정성과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무직 등의 정수 책정·채용을 원칙으로 규정
-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정규직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과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읍 ○○○ 등 104명의 공무직 전환 채용 시 인력 및 사무량, 상시·지속 업무 여부 등 검토 없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부적정 운영

2. 채용 적격사유 미확인 등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금고이상 형의 집행 후 5년 미 경과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후 2년 미만인 자,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미 경과자 등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면 ○○○ 등 83명의 공무직 신규채용 및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 채용 절차 시 등록기준지 행정기관 조회 등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
 - ※ 다만, 감사 기간 중 83명 모두 결격사유 조회한 결과 채용 불가능한 직원은 없음
-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2에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공고는 예정 인원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불가피한 사유에만 채용공고를 생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12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채용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군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는 사전 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업무 추진

3. 공무원 근로자 임금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및 「화순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에 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매월 군 지방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임금협약서*」 제9조에 **임금의 지급시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20일에 지급하며,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

* 2011. 11. 23. 임금협약서(화순군-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체결

- 그런데 위 군(○○○○과 등 5개 부서)은 '23년 2월 현재 **공무원 근로자 90명**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최소 8일에서 최대 12일까지 지연 지급**

☞ 앞으로 관련 부서에 기간제 및 공무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등 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며, 공무원 근로자 임금 지급일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③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20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차례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등 인사업무 추진

1.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에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

*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은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2/3 이상(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자체 공무원 등)**로 구성하도록 규정

- 또한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있는 자는 제척하거나 기피·회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및 '22년도 제2회 화순군 임기제공무원(○○○○○, ○○○ 전문인력)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시험위원을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 채 **부적정 평가**

- 또한 '22. 8. 29. ○○○ 전문인력 분야 면접시험에서는 시험위원 ○○○과 응시자 ○○○은 함께 근무한 경험 관계*가 있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시험위원에 제척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평가**

* 근무한 경험 관계 : 1년('21. 7. 21.~'22. 8. 7.) 동안 화순군 ○○○과에서 함께 근무

- 그리고 '22. 11. 22. ○○○○○○○센터장 분야 면접시험에서는 시험위원 ○○○와 응시자 ○○○은 함께 근무한 경험 관계*가 있는데도 시험위원에 제척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평가**

* 근무한 경험 관계 : 1개월 18일('14. 2. 12.~'14. 3. 30.) 동안 화순군 ○○○실에서 함께 근무

2.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22. 1. 1. 승진임용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지방○○7급 ○○○ 등 12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 0.5점을 최대 2회까지 부적정 부여

※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로 인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미발생

3.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하향 전보 미실시

- 「화순군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하향 전보를 실시하도록 규정

* 공무원 6대 비위행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면 ○○○○8급 ○○○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이후 인사 시 하향 전보 미실시

연번	직급	성명	징계처분			전보현황			하향전보 실시여부	비고
			비위유형	징계처분일	징계종류	징계처분 전 근무부서	징계처분 후 근무부서	전보일		
계		4명							미실시 4	
1	○○○○ 0급	○○○	음주운전	2021.00.00.	○○0월	○○○	○○○○○ (파견)	2023.00.00.	부	
2	○○ ○○○	○○○	음주운전	2022.00.00.	○○0월	○○○○○ ○○	○○○○○ ○○	-	부	
3	○○ 0급	○○○	음주운전	2022.00.00.	○○0월	○○○	○○○	2022.00.00.	부	공로연수
4	○○ 0급	○○○	음주운전	2022.00.00.	○○0월	○○○	○○○○○	2023.00.00.	부	

4.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에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인사위원회 심의 시 인사위원이 승진대상자를 추천*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채, 추천된 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 간 논의 후 승진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운영

* '21. 0. 00. ○○ 0급 승진대상자를 ○○과장이, '22. 0. 0. ○○ 0급 승진(교육)대상자를 인사위원 ○○○와 ○○○이 추천

- 그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자이면서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

5.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 미작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
- 또한,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며,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부터 '23년까지 5급 결원산정 인원만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하므로 5급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5급 승진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임용

6.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공로연수 인사발령 추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에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VIII. 공로연수편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징계처분 확정시까지 공로연수를 보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 00. 0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 결과 통보받은 ○○ 0급 ○○○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감사부서 등에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로연수* 부적정 실시**

* 공로연수 : '22. 0. 0. ~ '22. 00. 00.

- 그로 인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 기회가 징계가 요구 중인 자에까지 제공, 공로연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한 공로연수 인사발령으로 결원을 보충하여 승진인사가 부당하게 앞당겨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

☞ 임기제공무원 채용 및 자격증 가산점 평정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 수 2/3 이상으로 외부위원을 위촉,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향 전보 실시, 인사위원회를 정당하게 운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공로 연수를 보류,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실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수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및 징계의결요구건에 대하여 징계업무 추진

1.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7건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부적정하게 최대 60일까지 지연 처리

○ 그리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에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 요구,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은 '21. 00. 00.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지방○○ 0급 ○○○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수사개시 통보, '22. 0. 0.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무혐의) 수사결과 통보 접수

- 무혐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에 대한 품의유지의 의무 위반 등 관련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 절차를 미진행*하여 ○○○은 '22. 0. 00. 부적정하게 명예퇴직*(명예퇴직수당 3,155만원 지급)하는 결과 초래

* ○○○과('22. 0. 00.) : ○○○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의원면직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실 등)
○○○○실('22. 0. 00.) : ○○○의 비위관련 조사 중인지 여부 "해당없음" 회신(→○○과)

- 또한 '21. 00. 0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방○○ 0급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결과 통보, '21. 00. 0. ○○○에 대해 경징계의결 요구하겠다는 조치계획을 결재

- ○○○○○실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정당한 처리기한보다 2개월이 지난 '22. 0. 00.에서야 ○○○에 대해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여 부적정하게 징계업무 지연 처리 * ○○○ 공로연수 : '22. 0. 0. ~ '22. 00. 00.

2.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심사 절차 미이행

- 「지방공무원법」 제72조 등에 징계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이 가법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전에 직근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다만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심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징계의결 요구된 14명에 대하여 불문경고 등 의결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의결 요구부서의 심사청구 의사 확인 없이 부당하게 징계처분 집행

- ☞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 관련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및 前 담당자 총 2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 요구부서에 통보 후 심사청구 의사를 확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하는 등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5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 및 사후관리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등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는 소급 지급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과잉 지급분은 환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생계급여 등 4종의 사회보장급여를 24명 1,409만원 과소* 지급, 6명 146만원 과다** 지급
 - * 1인당 최대 장제급여 80만원, 최소 생계급여 1.5만원
 - ** 1인당 최대 기초연금 61.5만원, 최소 장애수당 4만원

(단위: 천원)

구분	사유	과소		과다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4	14,091	6	1,468
생계급여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및 사망한 이후 지급	3	483		
장애수당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및 사망한 이후 지급	2	140	3	300
기초연금	신규 신청한 달부터 미지급 및 사망한 이후 지급	4	1,468	3	1,168
장제급여	미신청으로 인한 미지급	15	12,000		

☞ 과소 지급된 생계급여 등 1,409만원을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장애수당 등 146만원은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6 화순○○○○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13년부터 '22년까지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센터를 화순군 직영으로 운영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등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기능별·사업별·성질별로 항목을 구분하고 사업별 목적·용도 등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실)은 '20년부터 '22년까지 직영기관인 화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모품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는데도 43억원을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부적정 예산 편성
 - *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307-10) 8.7억원,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금(307-11) 34.3억원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화순○○○○센터 운영 규정」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단체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고, 화순○○○○센터장은 군 소속 0급 상당의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 0. 00.부터 '23. 0. 0.까지 직영기관인 화순○○○○센터에 ○○ 0급 ○○○를 센터장으로 파견근무하도록 부적정 인사 발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에 군수 권한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에게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탁하고 공개하도록 규정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화순○○○○센터 운영 규정」 제4조에 ○○○센터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상담, 교육,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그런데 위 군(○○과)은 '15년 5월부터 '22년까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될 수 없는 군 직영기관인 화순○○○○센터에 선정절차 없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3억원~7억원의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

- 또한 위 군(○○○○과)은 '20년부터 '22년까지 ○○과로부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15~16명 채용하면서 단 1명의 저소득층 채용 없이 사업을 수행
- 그리고 '21. 0. 00. 화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내부 보고에서 타 부서 사무의 위·수탁 계약은 군수가 군수의 사무를 위·수탁하는 것이므로 부적정하다고 보고하였는데도, '22년 또다시 위·수탁 협약 체결

☞ 앞으로 관련 부서에 화순○○○○센터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을 요구·심의·확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인사발령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모 후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7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용역 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추진

1.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위원 선정

-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평가위원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도록 규정
- 또한 '20. 0. 00. 공고한 ○○○ ○○○○○ ○○○사업과 '21. 0. 00. ○○○ ○○○○○ ○○○사업의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에 농촌개발 관련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으로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면서 ○○○ ○○○○○ ○○○사업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생활체육과 교수, 퇴직 교수 등 2인을 평가위원으로 부적정하게 선정 평가 추진
 - 또한 ○○○ ○○○○○ ○○○사업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가 아닌 건축사 1인을 평가위원으로 부적정하게 선정 평가 추진

2. 입찰공고와 다른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 부적정

-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일 마감 전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에는 제안서 정성평가의 평가요소와 방법 등을 명시하며, 정량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총점(20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4. 5.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실시하면서 정성적 평가 시 입찰공고와 다른 평가항목과 배점으로 부적정하게 임의 변경하여 평가를 진행

입찰공고문 상 평가항목 및 배점		실제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평가 항목	배점	정성평가 항목	배점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25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30
진행상황 점검장치	5	공정관리의 적정성	5
관련기술 이전 가능성	3	(삭제)	-
사후관리의 적정성	7	사후관리의 적정성	5

- 또한 입찰공고 시 정량적 평가항목 중 특정지표에 대한 배점을 배점 한도(6점) 내에서 부여해야 함에도 전문인력 보유상태 항목에 대해 이를 초과하여 임의로 10점을 배정하는 등 3개 제안업체* 평가를 부적절하게 진행**

* (주)○○○○○○○○○○○○○○○○, (주)○○○○○○○, (주)○○○○○○○○○○○○○○○

** 「지방계약법」 및 입찰공고문 배점 기준대로 재평가 결과, 순위변동 없음

3.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절

-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에 계약담당자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0. 00. 화순군 ○○○○○○○○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평가위원 7인 중 6인만 참석하였는데도 예비평가위원을 소집하지 않고 6인으로만 평가를 추진

☞ 앞으로 관련 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부여하여 제안서 평가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8 용역 적격심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업무를 추진
-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에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 0. 00. ○○○ ○○○ ○○○○○○ ○○○○○ 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심사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마감일 ('21. 0. 00.)을 **6일 경과**한 '21. 0. 00.에서야 접수하고 계약(계약액 139백만원) 체결
 - * 감사과정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심사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점수변동은 확인되지 않음(적격)

☞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을 경과한 적격심사 서류를 부적정하게 지연 접수한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9 주민참여감독자 미위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업무 추진
-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계약담당자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등을 감독자로 위촉,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 행위 시정 건의 등의 역할을 규정
- 또한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3천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 마을회관 공사, 상·하수도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대상 범위를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 ○○○리(○○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등 총 328건의 대상 공사 중 단 6건만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 나머지 322건 (총계약금액 336억 6,100만원)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없이 준공처리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적시에 반영되고 불법·부당한 시공을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0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실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운영

1. 전자문서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전자정부법」 제25조 등에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개인정보법」 제2조 등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 33개 부서)은 총 3,469건에 대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접수하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대국민공개로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부적정

※ 감사기간 내 3,469건에 대해 부분공개(본문은 공개, 붙임문서는 비공개) 또는 비공개로 시정완료

2. 원문공개문서 민원인 정보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정보공개법」 제8조의2 등에 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규정
 - * 화순군의 경우 부단체장 이상 결재한 문서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자동 연계
- 또한 「민원처리법」 제7조 등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및 민원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과, ○○○○○소)은 총 7건에 대해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대국민공개 처리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 노출되게 하는 등 민원인 정보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비공개로 시정완료,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감사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가 비공개로 변경되었으므로 “**통보(시정완료)**”

11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 일시사용허가 등의 관리 업무 추진
- 「산지관리법」 제38조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는 자는 복구비를 예치하고,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매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
 - *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산지전용 등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데도 총 14건 3,958만원에 대하여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지 않는 등 추가복구비를 부과하지 않은 채 방치

☞ 재산정 된 복구비 3,958만원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시정요구**”

12 출납원 소관 검사 미실시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위 군(○○○○실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을 지정하여 세출예산 집행 등을 관리

1. 출납원 소관 검사 미실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 등에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정하여 연간 1회 이상 해당 일상경비출납원 소관의 장부 등을 검사하고 회계 업무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일상경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회계법」 제4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에 따르면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 7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총 9건, 1,565만원*의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직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개인카드 사용 후 회계 처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현금 개인계좌 입금 (6건, 526만원), 개인카드 사용 후 회계처리 (3건, 1,039만원)

- ☞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20년부터 '22년까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세출예산 기준을 준수하여 경비를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3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대장 미작성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실 등 34개 실과소, 읍면)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공사·용역·물품대금 10,035건, 3,542억원과 관급자재대금 6,523건, 1,616억원 등 총 16,558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5,159억원의 대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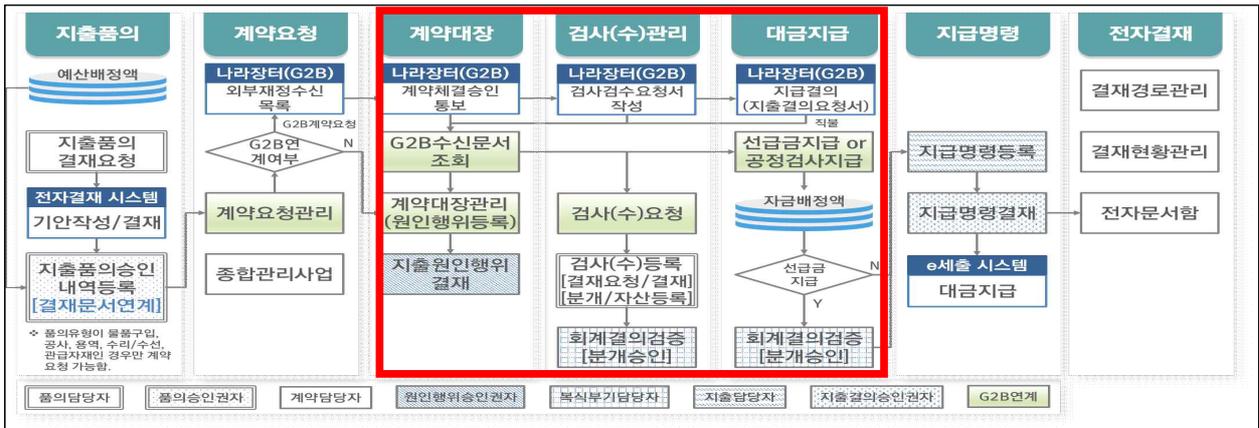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대장 미작성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군수는 발주계획부터 대가 지급까지 계약 전반에 관한 현황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관리 매뉴얼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지자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2장에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 34개 실과소, 읍면)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공사·용역·물품 8,046건(3,358억원), 관급자재 6,523건(1,616억원) 등 총 14,569건(4,974억원)의 계약대장 미작성으로 검수관리, 자산등록 등 절차 미이행
- 또한 같은 시스템의 검사(수)관리 과정에서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등의 자료 부정확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실적 마감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40조 등에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서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은 계약대장 기준으로 계약실적자료를 생성하고 실적 마감처리 후 전송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8,046건 3,358억원의 계약(공사 등)을 체결하고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 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실제 실적과 불일치하게 2,048건 198억원만을 제출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現 계약부서 담당 과장 및 담당 팀장 총 4명 **“훈계요구”**
- ☞ 미작성된 계약대장 14,569건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시정요구”**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계약대장 미작성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보”**

14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과)은 '19년 2월부터 '22년 10월까지 1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 ○○○○ 조성사업을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7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일부)의 이행 완료 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
- 같은 법 제64조 등에 계약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0. 0. 준공계를 접수하고, 민원 및 자체감사 등의 사유로 준공계 접수일로부터 000일이 경과된 '23. 0. 0.에서야 검사를 실시
 - *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으로 '22. 00. 00. 화순군 자체감사 실시, '22. 00. 0. 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22. 00. 00. 준공검사 무기한 연기 통보, '23. 0. 00. 시정명령 완료
-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9장 등에 검사 시 계약이행내용 전부(일부)가 계약에 위반·부당할 때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명하고, 시정완료일로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
 - * 지연배상금(지연 기간 '22. 00. 0. ~ '23. 0. 00.) = 11,295,000원(예상 금액)
 - 산출식 : 297,248,500원(잔여 준공금) × (0.5÷1,000) × 00일(시정명령일부부터 완료일까지)
 - 그런데 위 군(○○○○과)은 '22. 00. 0. 준공계 접수 후 검사를 미 실시 하고, '22. 00. 0.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후 '23. 0. 00. 시정명령 완료를 확인하고서도 '23. 0. 0.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지연배상금 부과를 어렵게 함

- ☞ 준공검사 미 실시 관련 前 업무담당자 및 現 계약담당자 총 2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계약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실시, 지연배상금 부과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부과 대상인 경우 적정 금액으로 부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15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 8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계약 업무를 추진

1. 물품구매 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 처리 부적정

○ 「계약집행기준」 제1절에 계약담당자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 한편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20. 0. 00.)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경쟁 회피"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2명), 주의 처분

- 그런데 위 군(○○○○과 등 3개 부서)은 "○○○○○ 제작 및 설치" 등 7건 (11억 3,668만원)의 단일사업을 17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함으로써 1억 1,366만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 및 특정 업체 혜택 제공

2. 공사·물품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공사량으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 계약해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위해 분할하면 안된다고 규정

○ 또한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한편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20. 0. 00.) "1인 견적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에 대해 주의 처분

- 그런데 위 군(○○○○과 등 7개 부서)은 "2022년 ○○○ ○○(○) ○○ ○○○ 구입" 등 14건(7억 5,423만원)의 유사사업을 32건*으로 분할계약함으로써 6,067만원의 예산절감 기회 상실 및 특정업체 혜택 제공

* 2건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30건 : 1인 견적 수의계약

- 또한 위 계약 건 중 ○○○○과 등 3개 부서에서 계약 의뢰한 “2021년 ○○ ○○○○○○사업 참여자 ○○구입(○○)” 등 4건(2억 1,301만원)은 ○○과에서 물품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2단계 경쟁 회피 및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現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및 담당자 총 35명 **“훈계요구”**
- ☞ 앞으로 관련 부서에 법령을 준수하여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6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실 등 10개 부서)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고,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25종 104개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재무과 배정(승인) 받아 취득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3항에 군수는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 미배정된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
- 또한 「화순군 물품 관리 조례」 제9조에 주관부서의 장이 재무관에게 물품매입 요구 시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물품 포함 여부 등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심사를 하지 않고 물품의 매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 10개 부서)은 정수 배정을 받지 않고 정수물품 관리대상인 ○○○ 등 7종 98개(4억 2,008만원)의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예산에 반영하여 임의로 취득
 - 위 물품 중 ○○○ ○○○○ 등 4종, 25개(1억 1,384만원)는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채 물품관리 업무를 부적정 처리

☞ 앞으로 관련 부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은 배정받은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7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 위 군(○○○○○살)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21년부터 '22년까지 ○○○○ ○○○○ 등 4개 마을기업에 재료 구입 등 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지원
- 「지방보조금법」 제34조 등에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35조 등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액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살)은 '22. 00. 00. ○○○○○○○○이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기요금 139만원(○○○, 광주 ○○ ○○○ 0000)을 부적정 집행하였는데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정 집행액(139만원) 회수 및 제재부가금(419만원) 미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등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
 - * (사업자) 영리·비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그런데 위 군(○○○○○살)은 '22년 ○○○○○○○○○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미등록되어 있는 ○○○에게 콩대두 구입비로 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2개 마을기업이 총 6명*에게 1,500만원을 부적정 집행했는데도 방치
 - * (확인결과) 6명은 사업자등록이 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개인(농업인)

☞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139만원을 회수하고 제재부가금 419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업체 등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소극 처리

- 위 군(○○과)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학교용지법」 제5조 등에 군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되,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 감소하여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2항 등에 공동주택분양자 등은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분양자료를 받은 즉시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
- 한편 전남도는 '20. 0. 00.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하 ○○○○”)으로부터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미부과한 부담금 부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함
 - 그런데 위 군(○○과)은 '20. 0. 00.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21. 0. 00. ○○○○ 해산 일까지도 분양자료*를 제출받지 않음
 - * ○○○○(612세대), 사업승인일 '17. 0. 00. 검사완료 '20. 0. 00.
 - 또한 '21. 0. 0. 부담금* 면제계획을 수립하면서 '17년 3월 화순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학생배치계획 검토의견만을 회신받았는데도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였고,
 - * (부담금 면제 추정액) 분양가격 118,602백만원 × 8/1,000 = 948백만원
 - 그리고 '20. 0. 00. ○○○○의 사용검사 완료로 '21. 2월 이후 부담금을 부과 시 주민반발 예상 등을 사유로 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 대응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였고, ○○○○○○○○○○○○○○○○○ 해산으로 부과 기회 일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 처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처리한 담당 팀장 “경징계요구”, 前 담당 과장 “훈계요구”

19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등 지방세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세원 관리를 추진

1.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부적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78조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미사용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 0. 0. ○○○○이 취득한 ○○○ ○○ 0-0 등 6필지의 취득세를 감면 후, '23. 4. 4.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용도(○○○○)로 미사용하였는데도 취득세 1억 4,890만원을 미추징
 - 감사기간 동안 지적받자, '23. 4. 5.에서야 전액 징수(1억 4,980만원)하는 등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2. 지목변경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 「지방세법」 제7조 등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하면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0조 등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가설) 건축물과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등에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면허 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지목변경 취득세 등 신고·납부 누락 세원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않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100건 3,063만원을 부과 누락
- 또한 ○○○○과 등 2개과는 '20년 5월부터 '23년 2월까지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면허 등에 대하여 면허증서를 발급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미확인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부과(추징) 대상세액		
			계	본세	지방교육세
합계		100	30,637	29,846	791
취득세	지목변경 미신고 추징	7	6,567	6,567	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신고 추징	25	16,459	15,668	791
	미신고 가설건축물 추징	7	6,360	6,360	0
등록면허세	토지형질변경추징	27	639	639	0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추징	6	108	108	0
	굴착행위신고추징	28	504	504	0

☞ 취득세 등 100건 3,063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감면목적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면허 부여 부서에서는 면허증서를 발급하면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0 ○○○ 편입용지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상금 등을 징수하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추진

1. ○○○ 편입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공유재산법」 제5조 등에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군수는 재산관리관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4조에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다른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2개과)은 ○○○ ○○○ 000-0 등 임야 등 7필지가 '06년 ○○○ ○○○으로 편입되어 체육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방치하고, 재산관리관을 ○○○과장에서 ○○과장으로 미변경
 -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미추진하고, 편입토지 32필지가 체육용지인데도 지목변경을 미실시
 - 그리고 '18년부터 '22년까지 ○○○○○(주)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1억 1,866만원을 부과 누락

2. ○○○○○○○○○ ○○○ 위수탁 관리 부적정

- 「공유재산법」 제27조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고, 위탁료 산출은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며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 0. 00. ○○○○○○○○ ○○○의 위수탁 운영계약(0년간)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직전 수탁자 자녀(○)를 부당하게 선정
- 또한 원가분석을 미 실시한 채 매년 위탁료를 1,000만원으로 고정하여 계약하였고, '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사유로 위탁료 총 2,000만원을 전액 감액

- ☞ ○○○○○○○○ ○○○ 위수탁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現 담당자 "훈계요구"
- ☞ ○○○ 편입토지 32필지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 재산관리관 및 지목 변경하고, ○○○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임야 7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억 1,866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 ○○○ 위탁료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1 내수면양식단지 분양대금 관리 부적정

- 위 군(○○○○과)은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추진
- 「화순 내수면양식단지 양식장용지 분양계약서」 제3조에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며, 최종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분양계약서 제4조에 피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미납부 시 피분양자는 체납금액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연체료)을 납부하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분양계약서 제10조 등에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계약 해제 시, 피분양자가 중도금, 잔금은 이자(연체이자 포함) 등을 공제 후 피분양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년 3월경 피분양자 3명*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추진하면서, 1명(○○○○○(주) ○○○)에게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297만원을 부과 누락

* ○○○○○○(주) ○○○, ○○○○(주), ○○○○○○(주) ○○○

☞ 「화순 내수면양식단지 양식장용지 분양계약서」에 따라 부과 누락된 지연손해금 5,297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22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수시로 여객자동차 등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을 통보받아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

1.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 등에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 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지침 제23조 등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규정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택시에 대한 247건의 의심거래신고를 제공받았으나, 실태조사나 행정적인 제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방치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군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보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군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해 28건, 246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누락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前 담당 팀장 및 담당자 "훈계요구"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28건 246만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가보조금 의심사례는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3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부터 '22년까지 원예시설의 현대화 지원으로 원예 작물의 품질개선 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44건 22억원을 지원·관리

1.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에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로 규정
- 또한 같은 지침 3. 가.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에 시·군은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할 때는 신청자에 대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는 사업 신청일('21. 0. 0.)에는 농업경영체에 미등록되었는데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로 부적정 선정
 - 또한 '22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는 사업신청일('22. 0. 00.) 5개월 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21. 0. 00.)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로 부적정 선정

2.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한 부적정 지원

- 「'21년 사업시행지침」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에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군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년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예산은 전체 사업비 8억 2,820만원의 30%인 2억 2,484만원 이하로 지원해야 하는데도, 4억 2,836만원(전체 사업비의 51.7%)을 부적정 지원

☞ 사업자격이 없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 배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現 담당자 "훈계요구"

☞ 앞으로 관련 사업 지침을 준수하여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비율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4 내수면 양식시설 허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부터 '23년 2월까지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업에 대한 허가 및 관리

1. 내수면양식시설 무허가 운영 방치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등에 육상의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 등 2명이 '23. 4. 6. 감사일 현재 허가 없이 내수면양식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방치

<무허가 내수면양식시설 운영 현황 >

운영자	무허가 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양식대상	주요시설
2명	4개소	6,545		
○○○	화순군 ○○○ ○○○ 000-0	2,520	우렁이	비닐하우스 및 수조
	화순군 ○○○ ○○○ 00, 00-0	640	"	수조
○○○	화순군 ○○○ ○○○ 000-0	2,132	"	비닐하우스 및 수조
	화순군 ○○○ ○○○ 000-0	1,253	"	"

2.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육상수조식 내수면 양식업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년 7월부터 '23년 3월까지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이 미설치되었는데도 육상수조식 내수면양식업 5개소에 대한 허가를 부적정 처리

☞ 무허가 양식시설은 철거하고, 허가를 받은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시설은 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요구"

25 화순군○○○ 보조금 정산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소)은 '20년부터 '22년까지 체육발전과 각종 체육활동 장려를 위해 화순군○○○ 등에 45억원을 지원

1. 화순○○○○○○○○○○○○○○○○○○○○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등에 군수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규정
- 한편 '21년부터 '22년까지 화순군은 군○○○로 화순○○○○○○○○○○○○○○○○○○○○(이하 “○○○○○○○○○○○○○○○○○○○○”) 보조금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군○○○는 ○○○○○○○○○○○○○○○○○○○○○으로 지원
 - 그런데 위 군(○○○○○○소)은 '21년부터 '22년까지 ○○○○○○○○○○○○○○○○○○○○○이 ○○○○○○○○○○○○○○○○○○○○○ 참가비 1,272만원을 받았는데도 군○○○로부터 수익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부적정 정산

2. 강사수당 등 원천징수 부적정

- 「소득세법」 제127조 등에 상급, 강연료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1년부터 '22년까지 ○○○○○○○○○○○○○○○○○○○○○ 심판비 등으로 15만원부터 160만원까지 총 9,571만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소득세 등 167건 842만원을 원천징수 미조치

☞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익금 1,272만원을 반납받지 않고 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現 업무 담당자 “**훈계요구**”

☞ 앞으로 화순군○○○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과)은 군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고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리 중

1.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 「지하수법」 제7조 등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 허가만료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
-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에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원상복구 명령을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5. 0. 00.부터 '23. 0. 00.까지 (주)○○○○○○○○ 등 27건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만료되었는데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연장절차 등 사전 안내 미실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미실시 한 채 방치

2.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 「지하수법」 제20조에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검사전문기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군수는 수질기준 부적합 시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 주기 >

용도	구분	수질검사 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마다 1회

*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먹는물관리법 검사기관,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등

- 또한 같은 법 제39조에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자가 수질검사를 미 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수질 검사대상 503개소 중 224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미부과

- ☞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업무 및 지하수 정기 수질 오염검사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前 담당 팀장 "훈계요구"
- ☞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안내하여 연장이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대상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 주기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주의요구"

27 먹는 물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소)은 군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5개 정수장과 마을상수도 3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냉·온수기, 정수기 18개소 신고수리 후 관리 중

1.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등 운영 관리 부적정

- 「수도법」 제21조 등에 '09. 7. 1.부터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 규모에 적합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또한 「수도법」 제32조 등에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 종사자에 대해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 감염 여부

- 그런데 위 군(○○○○○○소)은 '23. 4. 6. 감사일 현재 5개 정수장을 운영 하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총 6명(2급 1명, 3급 5명)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도 2명(3급)만 배치한 채 정수장 운영 관리 부적정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법정 배치 및 부적정 배치 현황 >

시설명	용량(㎡/일)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법정 배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부적정 배치현황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5개소		6	-	1	5	2	-	-	2
○○○정수장	5,000	2	-	1	1	2	-	-	2
○○·○○정수장	2,000	1	-	-	1	-	-	-	-
○○정수장	2,000	1	-	-	1	-	-	-	-
○○정수장	900	1	-	-	1	-	-	-	-
○○정수장	2,000	1	-	-	1	-	-	-	-

- 또한 '20년 3월부터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정수시설 근무자 ○○○ 등 13명이 건강진단을 미 실시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부적정

- 「마을상수도 관리 조례」 제7조 등에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 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또한 「수도법」 제32조 등에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0년 4월부터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규모수도시설 93개소(마을상수도 36, 소규모급수시설 57) 점검을 '20년 3분기, '22년 1분기만 실시하고 '20년 1분기 등 총 9분기 동안 점검 미실시
 - 또한 '20년 4월부터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규모급수시설 57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

3.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 「수도법」 제30조 등에 수돗물 정기적 검사 실시에 대한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0년과 '21년 수돗물 정기검사와 관련 검사 대상과 지점 선정을 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

4.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정수기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부적정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등에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설치장소, 설치 대수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여객 대합실, 도서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례식장, 학원

- 또한 「먹는물 영업장 점검 규정」(환경부) 제6조 등에 군수는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설치장소의 적정성 및 관리방법 준수 여부를 정기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0년 4월부터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 등 25개소가 미신고 운영 중인데도 방치하고 있고, 43개소(신고 18, 미신고 25)에 대해 지도·점검계획 미수립 및 점검 미실시

5. 동파 수도계량기 조례개정 미이행

- 「수도법」 제38조에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 공급 조건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또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며,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14년 3월)”에 수도계량기 동파는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하였고, 지자체장은 제도개선을 반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내용을 조례에 미반영한 채 운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에 대하여 설치·관리자로부터 설치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먹는 물 관련 시설 종사자는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수돗물 정기검사 대상 및 지점 선정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는 정기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상 개선요구”**

28 담배소매업 및 전기발전사업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살)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및 태양광 등을 이용한 전기발전사업의 인허가를 승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추진

1. 담배소매업 지정 취소 업무 처리 부적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등에 담배소매업을 지정받으려면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는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17조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미매입하거나 지정기준을 미충족하면 청문을 개최하여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살)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 등 146개소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미조치

2. 담배소매업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2개월, 2차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규정
- 한편 화순경찰서는 '21. 0. 00.부터 '22. 0. 00.까지 ○○○○○○○○ 등 등 4개 업소*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적발사항을 화순군에 통보
 - 그런데 위 군(○○○○○살)은 '21. 0. 00.부터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 ○○○ 등 3개소가 영업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 대상인데도 행정처분 미실시
 - * 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완료

3. 전기발전사업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 「전기사업법」 제9조 등에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기간 이내 사업 미실시할 경우 청문을 거쳐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산업통산자원부) 제8조에 태양광은 3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 태양광발전소 등 310개소가 준비기간 만료 최소 13일에서 최대 4,572일까지 경과하였는데도 청문 등 사업허가 취소 절차 미이행

- ☞ 「담배사업법」 행정처분을 미실시하여 위반 담배소매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前 담당팀장 및 前·現 담당자 총 4명 **"훈계요구"**
-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 허가취소 대상 146개소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대상 310개소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하도록 **"시정요구"**
- ☞ 앞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 위 군(○○과)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여 처리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인허가·지도·점검 업무를 추진
- 「환경오염물질 시설 지도·점검규정」 제19조에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등급, 지역, 용량에 따라 1~4회/연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점검대상 사업장 10,796개소에 대해 '20년 43개소(50m³/일 이상 38개소), '21년 6개소(50m³/일 이상 2개소), '22년 10개소(50m³/일 이상 3개소)만 지도·점검하는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50m³/일 이상은 65개소로 전체(10,796개소)의 1%에 불과하나, 시설용량 합산 시 전체의 33%를 처리함으로 대용량 시설을 우선 지도·점검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읍 등 10개 읍면)은 '20년부터 '22년까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청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증명서 발급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취증 발급 시 법인 등기 사항에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농지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읍 등 8개 읍면)은 '20년부터 '22년까지 농취증을 발급 받은 8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85필지 128,915㎡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를 미확인
 - 그로 인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결과 초래
 - 「농지법」 제7조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면적으로 규정
 - 그런데 위 군(○○읍 등 7개 읍면)은 '20년부터 '22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 등에 거주하는 ○○○ 등 15세대가 농지 소유면적이 1천㎡를 초과하는데도 32필지 20,113㎡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

☞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휴경으로 인해 농지 이용을 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소유 상한 면적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 업무를 추진 중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소홀

○ 「공공디자인법」 제5조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13년 6월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미변경

2.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소홀

○ 「옥외광고물법」 제6조 등에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며, 기금재원은 수익금(수수료, 과태료 등), 보조금 등으로 하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등 2억 4,929만원을 기금으로 미편성

☞ 「공공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시정요구”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2. 1. 27.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총괄·관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업무 소홀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규정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등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 해석(산재예방지도과-1397, '22.6.30.) 지자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그런데 위 군(○○○○과)은 '20. 0. 0. 부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관리 하였으나, '22. 0. 0. 인사발령으로 선임 부군수가 전입하였는데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22. 00. 00.에서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2.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미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도급자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업무,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3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2건) 중앙 투자심사 미실시

- 위 군(○○○○과)은 '22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사업 등 2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군수는 신규 일반투자사업의 총사업비 (보상·경비 등 포함)가 200억원 이상이면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또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심사의뢰 시기는 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2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농식품부 공모사업 2건*의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데도 중앙 투자심사 미실시
- * ① ○○ ○○○○ ○○(222억원, '22. 0. 공모선정), ② ○○○○○○(250억원, '22. 0. 공모선정)
- 또한 2건의 사업은 '22년 제3회추경과 '23년 본예산에 총 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2년 11월 ○○○○○○○○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

2. ○○○ ○○○○○ 조성사업 전남도 투자심사 미실시

- 위 군(○○○○○○소)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 ○○○○○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용지 보상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군수는 신규 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면 예산 편성 전 전남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0년 12월 ○○○ ○○○○○ 조성사업 계획을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수립한 후 전남도 투자심사 미실시
 - 또한 '21년 6월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22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 50억원을 편성 후 '23년 1월까지 보상금 26억원 지급
 - 그리고 '22년 12월 전남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23년 2월 ○○○ 교통수요 조사 미흡 등의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음

3.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자체 투자심사 미 실시

- 위 군(○○○○○실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일반투자사업 5건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군수는 신규 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면 예산 편성 전 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또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어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대상 심사기관에 맞게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한편 「지방교부세법」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고, 최근 감사원 기관 감사*에서 관련자 징계·주의 및 재정 패널티 부과를 통보한 사례가 있음

* ○○·○○시,○○·○○군 정기감사 보고서('21. 00.~00.)

- 그런데 위 군(○○○○○실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건의 사업에 대해 군 자체 투자심사를 미 실시한 채 사업을 추진(3건 완료*, 2건 추진 중**)

* (완료) ① ○○ ○○ 0○○ ○○○ / 27억원 ② ○○○○○○○○○ ○○○○○○ / 21억원
③ '22 ○○○○○○ ○○○○○○ / 23억원

** (추진 중) ① ○○○○ ○○○○○○○○ ○○ / 57억원 ② '23 ○○○○○○ ○○○○○○ / 33억원

☞ 전남도 및 군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시설관리 사업소 등 3개 부서 前 담당 과장 및 前·現 담당 팀장 총 3명 “**훈계요구**”

☞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을 준수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4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의 관련 업무와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1.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미실시

- 「주차장법」 제3조 등에 군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은 '20년부터 '22년까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총 8,145건* 발생하고 있는데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음

* ('20년) 3,847건 ('21년) 1,992건 ('22년) 2,306건

2.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시설기준 미준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

*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면 이상 설치

- 또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실 등 7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1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 중 9개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57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40면이 부족하게 설치한 채 운영 중

3. 노외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등 유지관리 부적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 한편 '21년 11월 국토부는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경보장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 그런데 위 군(○○○○○실 등 7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관내 노외주차장 30개소를 운영하면서 이 중 29개소에 경보장치를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미설치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시정요구”

☞ 주차장에 시설기준과 현지여건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35 공사 구간 내 사용 협의 없이 국·공유지 무단 훼손

- 위 군(○○과 등 2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하천 등의 공사 총 24건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24건 공사구간 내 편입된 국·공유지 555필지 34만 1,324㎡ 중 15건 371필지 29만 3,072㎡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
- 그로 인하여 15건의 공사의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11개월 동안 국·공유지 371필지 29만 3,072㎡를 무단 훼손·사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 하도록 “**시정요구**”
- ☞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라 사전에 국·공유지 사용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36 지장물(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 위 군(○○과 등 2개 부서)은 '18년부터 '23년 2월까지 29건의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건의 이전 비용을 지급
- 「토지보상법」 제61조 등에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
-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국세청훈령)에 각종 원인에 의해 사업자가 받는 '소유 재화*의 훼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대여 재화의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 * (재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 아울러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에 지장전주의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고, 이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
 - 그런데 위 군(○○과 등)은 '18년부터 '23년 2월까지 29건 사업구간내 지장전주(287본)에 대한 이전비(6억 9,669만원)를 한전(화순지사)에 지급하면서
 - 4건의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고, 25건은 부가가치세(5,305만원)를 포함하여 한전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지급하였는데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
- 그로 인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지장물 이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5,305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 부적정하게 지급된 지장전주 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5,305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37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허가 부적정

- 위 군(○○○○과)은 '21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총 194건의 건축허가 수행
- 「건축법」 제52조 등에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또는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 공장, 창고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 등
- 그런데 위 군(○○○○과)은 (주)○○○○ 등 3건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건축사가 관계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방화유리창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 통보
- 그로 인하여 (주)○○○○ 등 3동의 건축물이 인접 건물의 화재로부터 취약한 창호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

☞ 앞으로 관련 부서에 건축허가 시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 방화유리창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건축법」 제54조 등을 위반하여 방화유리창으로 설계하지 않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축사 3명을 「건축사법」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사징계 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38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

- 위 군(○○○○과)은 '21년 7월부터 '23년 2월까지 「건축법」 및 「화순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건축사가 405회 대행·운영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업무대행건축사)는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지정하도록 규정
- 한편 「화순군 건축 조례」에는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1. 7. 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화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업무대행 건축사를 운영
- 그로 인하여 전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52명의 건축사가 84회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되어 활동하는 결과를 초래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를 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지정하는 등 「화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도록 “**법령상 개선 요구**”

※ 개정안 : 건축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를 지정한다.

39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 18개 부서)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공사 1,350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
-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에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지정문화재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 등 2개 부서)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한 2020년 ○○ ○○○○○○(○○·○○면) 등 6건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

* 국보(○○○ ○○○○○), 천연기념물(○○○ ○○○○○), 도 기념물(○○○) 등

☞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現 담당 팀장 2명 “**훈계요구**”

☞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0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1,050건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업무 추진 중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9건 1억 8,293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지 않고 허가
 - * 전체 개발행위 미준공으로 9건 1억 8,293만원 이행보증금 예치 가능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경우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11건 2,338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 전체 개발행위 미준공으로 준공검사 시 11건 2,338만원 매입 가능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짧게는 9일, 길게는 393일이 경과된 76건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예치한 이행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예치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 중 보증기한이 만료된 3건 3,834만원의 보증기한이 짧게는 146일, 길게는 338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재예치 등 행정조치 미이행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現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이행보증금 미예치 9건 1억 8,293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11건 2,338만원은 매입하도록 하며,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76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경과된 3건 3,834만원은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재예치하도록 **“시정요구”**

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 등)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22건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회신하는 등 이행실태 업무를 추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미이행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등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협의권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고, 공사 시작 후 20일 이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하고 착공 및 준공 후에도 통보하도록 규정

○ 또한 협의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4. 6. 감사일 현재 공사를 시작한 22건 중 화순군 ○○○ ○○○ ○○○○ 부지조성공사 등 15건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 등을 하지 않음

* 관리책임자 미지정·통보 15건, 착공 미통보 17건, 준공 미통보 7건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업무 미이행

○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등에 사업시행자는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도록 규정

○ 또한 협의권자는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4. 6. 감사일 현재 22건 중 화순군 ○○○ ○○○ ○○○○○○ 부지조성공사 등 14건에 대해 이행실태를 시행하지 않아 관리대장 기록·비치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現 담당자 1명 “훈계요구”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공사 진행중인 14건 현장에 대해 이행실태 점검 하도록 “시정요구”

42 산림사업 안전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과)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등 총 477건에 대한 산림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음

1.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이행

- 「산림기술법」 제26조 등에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통보하고, 산림사업 준공 후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
- 한편 '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산림토목, 산림병해충방제) 안전관리 부실'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
 - 그런데 위 군(○○○○과)은 '22년 정부합동감사 처분을 받고도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64건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통보하지 않고, 준공된 15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2. 임도사업 설계심사 미이행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에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에 대하여 발주청은 차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산림휴양과)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020년 ○○○○○○ ○○○○ 개설사업 등 2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 추진하여 완료

3. 임도 개설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정보고·방침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2020년 ○○ ○○○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8건에 대해 총따기 시공 등을 하지 않는 등으로 4,676만원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치

☞ '2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前 담당자 및 담당 팀장 2명 "훈계요구"

☞ 임도 개설사업 등 과다 지급된 8건 4,67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43 하수도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소)은 '20년 4월부터 '23년 2월까지 동북호유역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등 16건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 하수도 업무 추진

1. 하수도 정비사업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 「하수도법」 제11조 등에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중 하수관로 연장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4. 6. 감사일 현재 ○○○○○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등 2건* 추진 시 하수관로 연장이 10% 이상 변경 되었는데도 도지사의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 추진

* (개량사업) 6.0km → 7.9km(증 1.9km, 31.7%), (신설사업) 12.4km → 14.1km(증 1.7km, 13.7%)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 「하수도법」 제20조에 군수는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매년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4. 6. 감사일 현재 5년이 경과된 하수관로 340.0km 중 236.6km(69.6%)의 기술진단 미실시 및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미점검

3.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 「하수도법」 제15조 등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 그런데 위 군(○○○○○○소)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농어촌마을하수도 20개소에 대하여 15개소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 마을하수도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용료(9,616천원) 미부과

4.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에서 가시설 일부 미설치 등 1억 3,20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하수도 정비사업 변경인가 및 기술진단 미실시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現 담당 팀장 1명 **“훈계요구”**
- ☞ 하수도 정비사업에 과다 계상된 1억 3,209만원을 감액하고, 미부과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961만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3. 모범사례

1 농촌인력지원센터 직영으로 농촌일손 부족 적극 대응

'21년부터 군에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농가 등 사회취약계층 일손 우선 배정으로 적극 지원 방안 마련

□ 추진배경

-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농작업자 알선·중개 파견
- 단위농협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문제점 발생

□ 주요 사업내용

- 특화*된 센터 운영으로 참여농가 및 농작업자의 만족도·신뢰도 향상
* 전국 최초 종일반, 파트타임반, 주말반, 맞춤형 휴일반 등 구성
- 인력 지원 우선 순위 지정하여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
 - ① 순위 : 독거노인, 장애인 농가 등 기초생활 대상 농가, ② 순위 :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③ 순위 :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 요청 많은 농가

□ 추진성과

- 누적 중개 인원은 11,032명으로 도내 군 단위 1위
 - 영농작업반('22년 기준) 196명/13조 구성·운영 중
- '22년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우수 모범센터 선정
 - '23년 사업비 인센티브 1,000만원 수여
- 위탁 운영 대비 참여 농가 170개소 참여작업자 1,759명 증가로 일손 도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직영 운영 실적 현황〉

(단위 : 명)

구분	화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위탁운영 (도곡농협)		증감 (A-B)
	2021년	2022년(A)	2019년	2020년(B)	
참여 농가 수	79	219	46	49	170
참여 작업자 수	10,154	11,032	9,226	9,273	1,759

□ 향후 추진계획

- 농가 및 작업현장 수시 방문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검토
- 숙련 농작업자와 신입 작업자 간 멘토링제도 및 중도 탈락 방지 상담이력제 운영
- 주말반, 파트타임반, 희망요일반 확대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2022년 농촌인력증가센터 우수사례집

2. 화순군 화순군청

1. 개요

2. 추진 배경

3. 추진 내용

4. 성과

5. 결론

6. 참고 사항

7. 부록

8. 기타

9. 참고 문헌

10. 기타

11. 기타

12. 기타

13. 기타

14. 기타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19. 기타

20. 기타

21. 기타

22. 기타

23. 기타

24. 기타

25. 기타

26. 기타

27. 기타

28. 기타

29. 기타

30. 기타

31. 기타

32. 기타

33. 기타

34. 기타

35. 기타

36. 기타

37. 기타

38. 기타

39. 기타

40. 기타

41. 기타

42. 기타

43. 기타

44. 기타

45. 기타

46. 기타

47. 기타

48. 기타

49. 기타

50. 기타

51. 기타

52. 기타

53. 기타

54. 기타

55. 기타

56. 기타

57. 기타

58. 기타

59. 기타

60. 기타

61. 기타

62. 기타

63. 기타

64. 기타

65. 기타

66. 기타

67. 기타

68. 기타

69. 기타

70. 기타

71. 기타

72. 기타

73. 기타

74. 기타

75. 기타

76. 기타

77. 기타

78. 기타

79. 기타

80. 기타

81. 기타

82. 기타

83. 기타

84. 기타

85. 기타

86. 기타

87. 기타

88. 기타

89. 기타

90. 기타

91. 기타

92. 기타

93. 기타

94. 기타

95. 기타

96. 기타

97. 기타

98. 기타

99. 기타

100. 기타

농림부 우수사례집 게재

20. 4. 10. 오전 10:10

중도일보: 중부권대표언론사 1981년 창간, 전국뉴스 및 종합경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사제공

중도일보

1981년 창간 | 중부권 대표 | jomgdo.com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농가 일손 부족 해결

이창석 기자 | 화순·가시밭지 2022-04-10 10:10

전날 화순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취약 문명화된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통해부터는 직명한다.

농촌인력 지원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맞춤형 농작업 인력을 일선 증개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손 공급으로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인력 구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인 복숭아,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는 영농작업반을 별도로 구성해 농작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생산성 증대에 농가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작업자의 경우,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주시 등 인접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작업자에게는 교통비 지급과 농작업 간 사고에 대비해 단체 상해보험도 적용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 또는 농작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촌인력 지원센터가 농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작업자의 경우에도 일시적,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이창석 기자 mediano@

언론보도 자료

2 | 구도심 및 전통시장 비점오염 저감사업

-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확대에 따른 빗물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침수 피해 예방
- ❖ 물순환 건강성 회복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에 기여

□ 추진배경

-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강우 초기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방류수역의 수질 악화
-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의 장기화로 피해가 발생, 국지성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3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50%} 10,000, 군비^{50%} 10,000)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훈리, 향청리, 삼첨리, 광덕리 일원
- 주요내용 : LID 빗물 정원 A=2,463m², 빗물저류조 1,230ton, LID* 특화 거리 및 도로 화단 조성 등



* LID : 저영향개발 기법(Low Impact Development)으로 빗물을 직접 유출하지 않고 지하로 침투·여과·저류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 관리 방식으로 수질개선, 강우 유출량 저감, 열섬 완화 등 효과

※ 점오염원 :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 등 오염의 발생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점오염원 :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농지에서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등이 빗물과 함께 유출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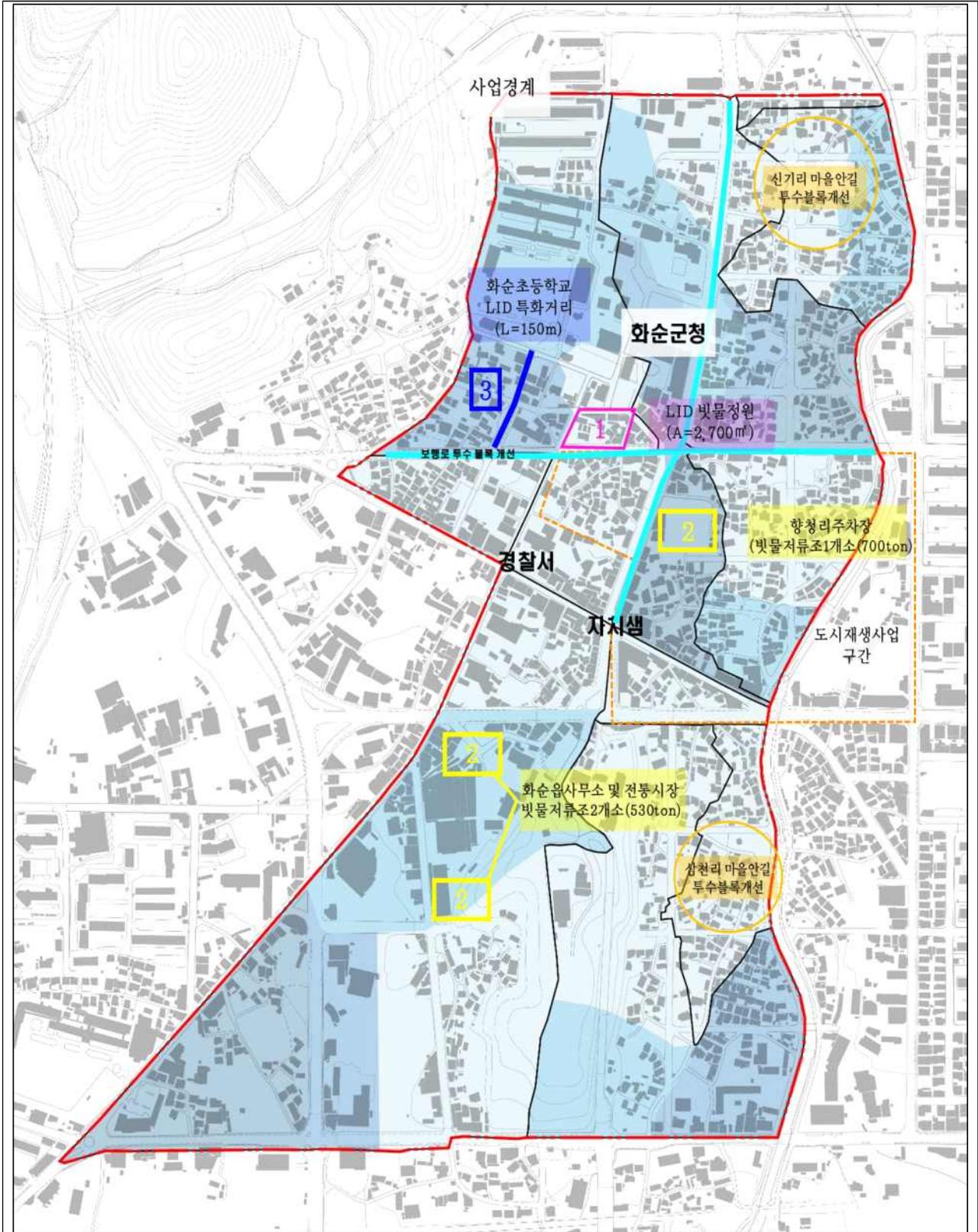
□ 추진실적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착수 : '16. 9.
- 전남 최초 조성된 구도심 비점오염저감사업 신청 및 선정 : '17. 3.~'18. 1.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협의 및 승인 : '20. 11.
- 시설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착수 : '21. 5.
- 구도심 인도 투수블럭 및 도로변 식물재배화분 설치(1차) : '22. 1.
-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 : '22. 5.
- 향청리 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 : '22. 10.
- 투수블럭 및 식물재배화분(2차), LID 빗물정원 설치 : 추진 중
- 사업완료 예정 * 추진율 : 65%(시설공사 4/5차분 추진 중) : '23. 12.

□ 기대효과

- 고효율 비점오염저감시설물 설치를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 환경 구축
- 불투수 면적의 감축으로 미세먼지 증가 및 열섬현상 악화를 개선하여 물순환 건강성 회복

○ 위치도



○ 설치 사진 및 설치 예정 계획

	
<p>투수블럭 설치 정주여건 개선</p>	<p>투수블럭 설치 정주여건 개선</p>
	
<p>식물재배화분 설치 정주여건 개선</p>	<p>식물재배화분 설치 정주여건 개선</p>
	
<p>투수블럭 설치 정주여건 개선</p>	<p>빗물파고라 우수저장탱크</p>



투수블럭 설치 정주여건 개선



향청리 주차장 빗물저장탱크 활용



향청리 주차장 빗물저류조



향청리 주차장



LID 빗물 정원 계획도

4. 처분요구서

목 차

① 건강검진 사유 공가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통보)	87
②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91
③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03
④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13
⑤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20
⑥ 화순○○○○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25
⑦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32
⑧ 용역 적격심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38
⑨ 주민참여감독자 미위촉 등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41
⑩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통보)	153
⑪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158
⑫ 출납원 소관 검사 미실시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시정, 주의)	161
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대장 미작성 등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통보) ...	165
⑭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주의, 통보)	174
⑮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177
⑯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188
⑰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시정, 주의)	191
⑱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소극 처리(징계, 훈계)	198

①9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등 지방세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	203
②0	○○○ 편입용지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213
②1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대금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221
②2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226
②3	시설원에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주의) ……	237
②4	내수면 양식시설 허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	242
②5	화순군○○○ 보조금 정산 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246
②6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훈계, 주의) ……	260
②7	먹는 물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개선) ……	272
②8	담배소매업 및 전기발전사업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주의) ……	286
②9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통보) ……	310
③0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주의) ……	314
③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주의) ……	321
③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	325
③3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 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	329
③4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미 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시정, 통보) ……	337
③5	공사 구간 내 사용 협의 없이 국·공유지 무단 훼손(훈계, 시정, 주의) ……	345
③6	지장물(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시정) ……	351
③7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허가 부적정(주의, 통보) ……	356
③8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개선) ……	360

③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주의)	365
④⑩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69
④⑪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80
④⑫ 산림사업 안전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87
④⑬ 하수도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부적정(훈계, 시정)	395

전라남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건강검진 사유 공가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총 1,597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의 공가 사용을 허가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 등¹⁾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7조 4항 등에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화순군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공가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며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소속 직원들이 건강검진 등을 받을 때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가 허가를 득한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에는 정당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가보상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등 18개 부서)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과에 근무하는 ○○○○0급 ○○○ 등 29명이 [별표] “공가 부당 사용 및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 명세”와 같이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 신청을 한 후, 실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 용무를 처리했는데도 공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부적절한 공가 사용분에 대한 연가보상비 3,156,500원이 29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소속공무원 등이 목적에 맞지 않게 공가를 사용했는데도 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3,156,000원을 회수하고(시정)
- ②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검진 관련 공가 사용에 대한 직원 복무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략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 ○○읍, ○○면, ○○면)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3명의 공무원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관리 운용하였다.

2. 공무원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 전환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인사부서는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수를 책정하고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6~10인에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소속부서의 인력과 사무량, 채용목적, 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원 근로자 등의 정수를 책정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6~

10인에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1] “공무직 전환·채용 현황 및 결격사유 조회 명세”와 같이 ○○읍 ○○○ 등 103명에 대한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속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목적, 인원 등의 적정 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공무직 전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공무직 신규 채용 및 기간제 공무직 전환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결과 초래하였다.

3. 신규채용 및 공무직 전환 시 결격사유 확인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각 호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당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를 의뢰하는 등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1] “공무직 전환·채용 현황 및 결격사유 조회 명세”와 같이 ○○면 ○○○ 등 83명의 기간

2) 제12조 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호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7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 근로자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기간제 공무원 전환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기간제 근무자 채용 공고절차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10개월 미만의 한시적 근로자의 채용 및 국·도비 재원 기간제 채용 등은 인사부서와 협의후 사용부서장이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업무의 긴급 추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9개월 미만의 한시적 근로자 채용 및 국·도비 재원 기간제 채용 등은 관리부서와 협의 후 소속부서에서 채용할 수 있고, 채용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 예정 업무 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 ○○과, ○○과, ○○○○과, ○○○○과, ○○○○과, ○○소, ○○읍, ○○면, ○○면, ○○면, ○○면)은 [별표 2]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미공고 명세”와 같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읍 ○○○ 등 2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소속 부서에서 채용하면서 공고를 생략할 사유가 없는데도 군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하는 사전 절차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군민들이 공정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공무직 근로자 임금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에 따르면 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금협약서³⁾」 제9조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 시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20일에 지급하며,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지급 시기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20일에 지급하며,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 ○○○○과, ○○○○과, ○○소, ○○읍)은 [별표3] “공무직 근로자 임금 지급 부적정 명세”와 같이 공무직근로자 ○○○○과 ○○○ 등 90명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 지급일을 매월 최소 8일에서 최대 12일까지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각 부서에서 기간제 및 공무직 채용 시 채용 공고

3) 임금협약서 체결(2021. 00. 00.) : 화순군 대리인 부군수 ○○○, 화순군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

와 결격사유 조희 등의 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속부서의 인력과 사무량, 상시·지속적 업무 여부 등을 검토하며, 공무원 근로자 임금 지급일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3] 생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화순군 ○○소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 등 16개 분야 20명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였고,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2차례씩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및 정기인사 등 인사업무를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는 2021. 0. 00.부터 2023. 0. 0.까지 ○○과 ○○팀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격증 가산점 평정,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XI.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2. 임기제공무원 임용 편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하고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임용시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의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직자의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외부위원을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 등이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시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기피·회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20명을 채용하면서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을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1] “임기제 공무원 채용 명세”와 같이 2020년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및 2022년도 제2회 화순군 임기제공무원(○○○○○, ○○○○○○○○) 임용시험의 면접시험 시험위원을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 채 부적정하게 면접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는 2022년도 제2회 화순군 임기제공무원(○○○ ○○○○) 임용시험에서 2022. 0. 00. 면접시험 시험위원 ○○○과 응시자 ○○○은 1년 동안

화순군 ○○○○과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 관계가¹⁾ 있고, 2022년도 제3회 화순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서 2022. 00. 00. 면접시험 시험위원 ○○○와 응시자 ○○○은 1개월 18일 동안 화순군 ○○○○실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 관계가²⁾ 있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시험위원으로 제척하거나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면접시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외부위원 수 과소 위촉, 응시자와 근무경험 관계가 있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 등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 평정을 할 경우 대상 공무원이 승진임용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2] “자격증 가산점 부적정 부여 명세”와 같이 2022. 0. 0. 승진임용 시 이미 자격증 가산점이 반영된 지방○○○급 ○○○ 등 12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자격증 가산점 부여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자격증 가산점 0.5점을 최대 2회까지 부당하게 부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른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 등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1) ○○○ : 2021. 0. 00.부터 2023. 0. 0.까지 화순군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 ○○○ : 2019. 0. 00.부터 2022. 0. 0.까지 화순군 ○○○○과에서 일반임기제로 근무

2) ○○○ : 2014. 0. 00.부터 2014. 0. 00.까지 화순군 ○○○○○장으로 근무, ○○○ : 2013. 0. 0.부터 2019. 0. 00.까지 화순군 ○○○○○에서 근무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하향 전보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군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³⁾」에 따르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6대 비위행위⁴⁾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하향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 처분 이후 인사 시 사업소 또는 읍·면·동으로 하향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면 ○○○○0급 ○○○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이후 인사 시 하향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22. 0. 00. 징계처분을 받은 ○○○○○○ ○○○○○ ○○○은 동일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4명에 대하여 하향 전보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하향 전보 미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번	직급	성명	징계처분			전보현황			하향전보 실시여부	비고
			비위유형	징계처분일	징계종류	징계처분 전 근무부서	징계처분 후 근무부서	전보일		
계		4명							미실시 4	
1	지방○○○○0급	○○○	음주운전	2021.00.00.	○○○월	○○○	○○○○과파견	2023.00.00.	미실시	
2	지방○○○○○	○○○	음주운전	2022.00.00.	○○○월	○○○○○○	○○○○○○	-	미실시	

3) 2021년 화순군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000, 2021.0.0.) : 담당자 ○○○, 팀장 ○○○, 과장 ○○○, 부군수 ○○○, 군수 ○○○
 2022년 화순군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0000, 2022.0.00.) : 담당자 ○○○, 팀장 ○○○, 과장 ○○○, 부군수(전결) ○○○
 2023년 화순군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0000, 2023.0.00.) : 담당자 ○○○, 팀장 ○○○, 과장 ○○○, 부군수(전결) ○○○

4) 6대 비위행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연번	직급	성명	징계처분			전보현황			하향전보 실시여부	비고
			비위유형	징계처분일	징계 종류	징계처분 전 근무부서	징계처분 후 근무부서	전보일		
3	지방○○○급	○○○	음주운전	2000.00.00.	○○○월	○○과	○○과	2022.00.00.	미실시	공로연수
4	지방○○○급	○○○	음주운전	2022.00.00.	○○○월	○○면	○○○○과	2023.00.00.	미실시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마련한 인사운영기본계획 및 인력관리계획의 취지를 훼손하고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인사위원회 형식적 운영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를 하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며,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등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력자료, 주요 업무성과, 업무역량 등 승진후보자별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관련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설명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의대상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능력과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전심 의하여 승진대상자를 확정하면 임용권자에게 인사위원회가 확정된 승진대상자를 보고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진임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승진대상자를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021. 0. 00. 지방○○6급 승진대상자 5명을 심의 시에 인사위원인 ○○과장 ○○○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1번부터 4번, 7번을 승진대상자로 추천, 2022. 0. 0. 지방○○5급 승진(교육)대상자 4명을 선발 시에 인사위원 ○○○가 4번과 15번을 인사위원 ○○○이 5번과 7번을 승진(교육)대상자로 추천, 2022. 00. 00. 지방○○5급 승진(교육)대상자 3명을 선발 시에 인사위원 ○○○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3번과 7번을 추천, 인사위원 ○○○이 6번을 승진(교육)대상자로 추천하자 추천된 자보다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도 않은 채 추천된 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 간 논의 후 추천된 자를 그대로 승진 및 승진(교육)대상자 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그로 인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선순위자이면서도 추천받지 못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 공로연수 인사발령 추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VIII. 공로연수편에 따르면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 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징계처분 확정 시 까지 공로연수를 보류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

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로연수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로연수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징계처분 확정 시 까지 공로연수를 보류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로연수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로연수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로연수 중단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1. 00. 0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200만원) 처분 결과 통보받은 지방○○0급 ○○○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징계처분 확정 시까지 공로연수를 보류하여야 하는데도 ○○○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2. 0. 0.부터 같은 해 00. 00.까지 부당하게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한 공로연수 기회가 징계가 요구 중인 자까지 제공되었고, 공로연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한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하고 결원을 보충하여 승진인사가 부당하게 앞당겨 진행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7.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 미작성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 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 승진후보자 명부

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며,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기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횡수별로 작성하며,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라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급 결원 산정 인원만큼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하므로 5급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단 한차례도 5급의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부적정하게 승진임용을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시험위원 수 2/3 이상으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을 미부여, 공무원 6대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향 전보를 실시하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공로 연수를 보류하고,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과)

훈계대상자 ① 화순군 ○○면 지방○○사무관 ○○○

② 화순군 ○○면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및 6급 이하 소속 직원의 경징계의결 요구건에 대하여 화순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하였다.

지방○○사무관 ○○○은 2021. 0. 0.부터 2022. 0. 0.까지 ○○○○실 ○○팀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건의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1. 0. 00.부터 2023. 0. 0.까지 ○○○○실 ○○팀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사건의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

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순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화순군수는 청원경찰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화순군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¹⁾」에 따르면 불법촬영 등 고의성 디지털 성범죄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에 따라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권없음” 처분이 되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불법촬영·유포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감독자나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 등 엄중 문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7건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별표 1] “징계의결요구 지연처리 명세”와 같이 최대 60일까지 지연하여 징계의결요구 하는 등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000호(2017. 00. 00.)

또한 ○○○○실은 2021. 00. 00.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지방○○○급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고, 2022. 0. 0.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지방○○○급 ○○○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수사결과(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어 불송치)를 통보를 받았으며, 지방○○○급 ○○○에 대한 공무원 품의유지의의무 위반 등 관련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전라남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어 불송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에 대한 관련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실은 2022. 0. 00. ○○○과로부터 ○○○의 명예퇴직²⁾ 신청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공문을 접수하여, 2022. 0. 00. ○○○과에 ○○○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지 여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회신 공문을 발송³⁾하였다.

그리고 ○○○○실은 2021. 00. 00.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방○○○급 ○○○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를 받았고, 2021. 00. 0. 지방○○○급 ○○○에 대해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의결 요구하겠다는 공무원범죄(음주운전) 조치계획을 결재⁴⁾하였는데도, 타당한 이유가 없이 부적정하게 2022. 0. 00.에서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였다.

그로 인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 징계의결 요구 등이 처리되지 않아 징계의결 요구 대상자에 대해 명예퇴직, 공로연수⁵⁾를 실시하였고, 승진 및 급여 등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심사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2) 명예퇴직 : ○○○ 2022. 0. 00.(명예퇴직수당 00,000,000원)

3) 의원면직 제한사유 해당여부 조회 회신(2022.0.00.) : 담당자 ○○○, ○○팀장 ○○○, ○○○○실장 ○○○

4) 공무원 범죄(음주운전) 조치계획(2021.00.0.) : 담당자 ○○○, ○○팀장 ○○○, ○○○○실장 ○○○, ○○수(전결) ○○○

5) 공로연수 : ○○○ 2022. 0. 0. ~ 2022. 00. 00.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의결 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제9장 복무 및 징계의 3. 징계편에 따르면 실제로 심사를 하기 전에 권한있는 징계처분권자가 적법하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비록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심사청구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후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징계의결요구부서(○○○○실)의 경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처분할 때는 우선 그 의결 결과를 징계의결요구부서에 통보하여 징계의결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한 후 징계대상자에게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징계의결요구부서(○○○○실)로부터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지방○○0급 ○○○ 등 14명에 대하여 징계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별표 2] “징계의결 심사 절차를 위반한 징계 명세”와 같이 화순군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계의결요구부서에 통보하고 징계의결요구부서의 심사 청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징계처분을 집행하는 등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그로 인하여 징계의결요구부서는 화순군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①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 관련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
○사무관 ○○○,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범죄사건에 대해 타당한 이
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결과를 징
계의결 요구부서에 통보 후 심사청구 의사를 확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하는 등
징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과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중 소득 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만65세 이하 중 소득기준액 이하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신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착오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및 「기초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결정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소급지급 편 및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복지급여 신청을 성실하게 하였는데도 보장기관이 반영을 누락하는 등 그 귀책 사유가 보장기관에 있을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 이내에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지침 급여지급 절차 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소득 인정액, 가구원 변동, 전출입 등을 확인하여 지급 급여를 변동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 실태 등이 변동된 경우 매월 급여 확정 전까지 변동자료를 확인하여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2020. 0. 00.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권이 결정된 ○○○에 대하여 신청일이 속한 2020년 0월부터 생계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1개월분인 451,580원을 누락한 채 2020년 00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¹⁾하는 등 [표 1]과 같이 총 6명에게 1,237,94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또한 2020. 0. 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의 장애수당을 2020년 0월에 지급하면서 3개월분인 120,000원을 지급하여 4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표 1]과 같이 총 2명에게 26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1] 신규 수급자 생계급여·장애수당·기초연금 과소 지급 현황(2020년 4월~2023년 2월)

(단위 : 원)

구분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최초신청일	실제 지급		정당 지급 금액	과소지급	과다지급	비고
					최초 지급일	금액				
계		8명						1,237,940	260,000	
생계 급여	소계	3명						482,940		
	1	○○○	1900.00.00.	2020.00.00.	2020.00.00.	527,160	2,108,640	451,580		1개월 과소
	2	○○○	1900.00.00.	2022.00.00.	2023.00.00.	852,090	867,770	15,680		연도 전환
	3	○○○	1900.00.00.	2022.00.00.	2023.00.00.	852,090	300,190	15,680		연도 전환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소계	4명						140,000	260,000	
	1	○○○	1900.00.00.	2020.00.00.	2020.00.00.	120,000	80,000		40,000	1개월 과다
	2	○○○	1900.00.00.	2021.00.00.	2021.00.00.	40,000	60,000	20,000		착오 지급

1) 2020. 00. 0. 수급자로 책정, 2020년 0~00월(3개월분) 긴급복지 생계 지원(1,657,060원)

구분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최초신청일	실제 지급		정당 지급 금액	과소지급	과다지급	비고
					최초 지급일	금액				
	3	○○○	1900.00.00.	2021.00.00.	2022.00.00.	40,000	160,000	120,000		3개월 과소
	4	○○○	2000.00.00.	2022.00.00.	2023.00.00.	550,000	330,000		220,000	2개월 과다
기초 연금	소계	1명								
	1	○○○	1900.00.00.	2022.00.00.	2023.00.00.	323,180	938,180	615,000		2개월 과소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사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급여 미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장제급여편에 따르면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를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에게 1인당 800천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장제급여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가구원 또는 장제조치를 실시하는 사람이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이 2022. 00. 0. 사망하였으나 장례를 책임진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장제급여 800천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2]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장례를 책임진 자 총 15명에게 12,000,000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표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급여 미지급 현황(2020년 4월~2023년 2월)

(단위 : 원)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망일	미지급 장애급여액	미지급 사유
계	15명			12,000,000	
1	○○○	1900.00.00.	2022.00.00.	800,000	미신청
2	○○○	1900.00.00.	2023.00.00.	800,000	미신청
3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4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5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6	○○○	1900.00.00.	2021.00.00.	800,000	미신청
7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8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9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10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11	○○○	1900.00.00.	2023.00.00.	800,000	미신청
12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13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14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15	○○○	1900.00.00.	2020.00.00.	800,000	미신청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사망자 사회보장급여 착오 지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제15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환수 편, 「기초연금법」 제16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환수 편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상실하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일이 속한 달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급여 전액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사망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된 급여는 환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2021. 0. 0. 사망한 ○○○에게 사망일이 속한 달인 2021년 0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 0월까지만 지급하는 등 [표 3]과 같이 총 3명에게 853,5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또한 2020. 00. 00. 사망한 ○○○에게는 사망일이 속한 달인 2020년 00월까지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년 0월까지 1개월을 과다 지급하는 등 [표 3]과 같이 총 4명에게 1,208,500원을 과다 지급하고 환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3] 사망자 장애수당·기초연금 착오 지급 현황(2020년 4월~2023년 2월)

(단위 : 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	최종지급일	과소지급액	과다지급액	비고
계		7명				853,500	1,208,500	
장애수당	소계	1명					40,000	
	1	○○○	1900.00.00.	2020.00.00.	2021.00.00.		40,000	1개월 과다
기초연금	소계	6명				853,500	1,168,500	
	1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다
	2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1개월 과다
	3	○○○	1900.00.00.	2022.00.00.	2022.00.00.		615,000	2개월 과다
	4	○○○	1900.00.00.	2021.00.00.	2021.00.00.	300,000		1개월 과소
	5	○○○	1900.00.00.	2022.00.00.	2022.00.00.	307,500		1개월 과소
	6	○○○	1900.00.00.	2022.00.00.	2022.00.00.	246,000		1개월 과소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수급자 24명에게 생계급여 등 과소 및 미지급된 사회보장급여 14,091,440원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6명에 대하여 1,468,50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화순○○○○센터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실,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관내 저소득층 주민의 근로능력 향상 등을 통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센터를 화순군 직영으로 운영하였다.

2. 직영으로 운영한 화순○○○○센터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에 맞게 운영하며, 예산부서는 예산방침을 시달하고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 사무는 ○○○○실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의 사업부서는 사업비 등 보조금 예산을 사업별 목적과 추진계획에 맞게 세출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예산요구내용을 산출근거까지 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의회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였던 화순○○○○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종사자특별수당 및 ○○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민간이전사회복지사업보조금(307-11)으로 편성요구하고 종사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307-10)으로 편성 요구하는 등 세출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실은 ○○○○과에서 요구한 ○○○○운영비와 ○○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이 기준에 맞게 요구되었는지 산출근거까지 조정하여 심의·확정하여야 하나 부적정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을 그대로 확정하여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 운영 및 사업 예산편성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천원)

편성 연도	부서명	정책 사업명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본예산기준)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2020	○○ ○○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 운영	307-10	252,431	156,238	22,320	73,873	○○ 운영비
					307-11	6,480		2,592	3,888	종사자 특별수당
				○○사례 관리	307-10	29,960		8,988	20,972	사례관리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7-11	107,175	85,739	6,430	15,006	희망키움 통장 등 5개사업
				○○소득 공제	301-01	58,928	47,142	3,536	8,250	○○ 장려금
				○○사업	101-04	128,000	102,400	7,680	17,920	지자체 직접사업
					201-01	2,000	1,600	120	280	사무용품 등
					202-01	4,000	3,200	240	560	○○근로 사업여비
307-11	1,032,996	826,397	61,980	144,619	참여자 인건비및 운영비					
2021	○○ ○○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 운영	307-10	256,299	158,946	22,706	74,647	○○ 운영비
					307-11	6,480		2,592	3,888	종사자 특별수당
				○○사례 관리	307-10	30,728		9,218	21,510	사례관리

편성연도	부서명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본예산기준)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2022	○○○○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7-11	114,483	93,210	6,870	14,403	희망키움 통장 등 5개사업
				○○소득 공제	301-01	57,706	47,244	3,010	7,452	○○장려금
				○○사업	101-04	146,000	116,800	8,760	20,440	지자체 직접사업
					201-01	2,000	1,600	120	280	사무용품 등
					202-01	1,200	1,000	60	140	○○근로 사업여비
					307-11	1,031,997	813,236	69,860	148,901	참여자 인건비및 운영비
				○○○○ 운영	201-01	10,000			10,000	○○○○ 회계감사 용역
					307-10	268,779	167,682	23,955	77,142	○○ 운영비
					307-11	6,480		1,944	4,536	종사자 특별수당
					○○사례 관리	307-10	30,992		9,298	21,694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07-11	118,443	98,455		6,001	13,987	희망키움 통장 등 5개사업			
○○사업	101-04	140,000	126,000		4,200	9,800	지자체 직접사업			
	201-01	2,000	1,800		60	140	사무용품 등			
	202-01	1,000	900		30	70	○○근로 사업여비			
	307-11	1,013,984	912,586	24,710	76,688	참여자 인건비및 운영비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직영하는 화순○○○○센터에 소속공무원 파견 인사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건복지부 「○○○○안내」 ○○○○○○○편 및 「화순○○○○센터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시·군에서 직영하는 ○○센터장을 변경할 경우 도지사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화순군은 화순○○○○센터장으로 6급 상당의 화순군 소속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에서 직영하는 화순○○○○센터에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6급 상당의 소속 공무원을 전보 인사발령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1. 0. 00.부터 2023. 0. 0.까지 파견 근무 대상이 아닌 화순○○○○센터에 ○○ 6급 ○○○를 ○○장으로 파견 인사 발령하여 총 0년 0개월 동안 부적정하게 파견 근무¹⁾하게 하였다.

4.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 민간위탁기관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화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르면 화순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5조 및 제7조, 제13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1) 화순○○○○○○장 인사 현황

- 2018. 00. 00.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개인사정에 의한 퇴직)
- 2018. 00. 00. ~ 2019. 0. 00. ○○○○팀장(○○6급 ○○○) 겸임
- 2019. 0. 00. ~ 2020. 0. 00. ○○○○팀장(○○○○6급 ○○○) 겸임
- 2020. 0. 0. ~ 2021. 0. 00. ○○○○팀장(○○○○6급 ○○○) 겸임
- 2021. 0. 00. ~ 2022. 0. 00. 화순○○○○○○ 파견(○○6급 ○○○), ○○장 발령
- 2022. 0. 00. ~ 2023. 0. 00. 화순○○○○○○ 파견 연장(○○6급 ○○○)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을 공모하여 공개모집에 응시한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중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15년 5월부터 2022년까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면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는데도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영으로 운영하는 화순○○○○센터와 [표 3]과 같이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매년 민간위탁금을 지급하였다.

[표 3]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협약 체결 및 위탁금 지급 현황(2015년 5월~2022년 12월)

(단위 : 원)

위수탁기간	위수탁 체결일	위탁 공중화장실	위탁금액	수탁기관	공개모집 여부	심의개최 여부	위탁사실 공고여부
2015.00.00.~ 2015.00.00.	2015.00.00.	167개소	386,972,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16.00.00.~ 2016.00.00.	2016.00.00.	173개소	589,800,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17.00.00.~ 2017.00.00.	2017.00.00.	170개소	589,800,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18.00.00.~ 2018.00.00.	2017.00.00.	172개소	650,000,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19.00.00.~ 2019.00.00.	2018.00.00.	178개소	662,660,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20.00.00.~ 2020.00.00.	2019.00.00.	152개소	720,000,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21.00.00.~ 2021.00.00.	172개소	720,00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152개소	670,000,000	화순군○○○○ (화순군 직영)	부	부	부
	2022.00.00.~ 2022.00.00.	152개소	680,760,00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과는 2021. 4. 14. 화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안)을 내부 보고²⁾하면서 타 부서 사업의 위·수탁 계약 사무 추진은 군수가 군수에게 위탁하는 형태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공중화장실

2) ○○○○과-13406(2021. 4. 14.), 부군수 전결

청소사업을 화순○○○○센터장 명으로 또다시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하였다.

5. 화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추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화순○○○○센터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을 위한 상담, 교육, 취업알선, 자영창업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화순○○○○센터의 모든 사업이 설치목적인 저소득층의 ○○과 자립 지원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과로부터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표 2]와 같이 참여자 자격요건으로 운전가능자나 차량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채용된 15명에서 16명의 기간제근로자 중 저소득층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저소득층 주민의 ○○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업 참여자 모집 현황(2020년~2022년)

사업연도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인원	자격요건	비고
2020	미공고			2019년 채용자 근무연장 근로계약 작성	채용 16명 중 저소득층 0명
2021	○○센터홈페이지 공고 공개모집	2020.00.00.~ 2020.00.00.	○○명	경력자우대, 다자녀·저소득층·장애인(청소가능자)우대, 운전가능자, 차량소유자, 남자인 경우 군필자 또는 동등한 자격인 자, 화순군 거주자, 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채용 16명 중 저소득층 0명
2022	○○센터홈페이지 공고 공개모집	2021.00.00.~ 2022.00.00.	15명	공고일 이전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운전면허 2종이상, 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채용 15명 중 저소득층 0명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화순○○○○센터가 저소득층의 ○○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을 요구·심의·확정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인사발령하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모 후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위탁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용역 계약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다.

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위원 선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편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0. 0. 00. 공고한 화순군 공고 제2020-0000호 ○○면 ○○○○○○○○○사업 ○○○○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와 2021. 0.

00. 화순군 공고 제2021-00호 ○○읍 ○○○○○ ○○○사업 기본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참가자격은 1년 이상 관련분야(농촌개발, 농촌관광, 지역개발 등의 유사과)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또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 자로서 해당 심사분야 업무 관련 조교수 이상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등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낙찰자 결정기준」 그리고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 평가위원 예비명부 21인(평가위원의 3배수)을 구성하고 최종 7인의 평가위원을 선정,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적 평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면 ○○○○○ ○○○사업 ○○○○○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평가위원(후보자)에 대해 자격여부를 검토하고 예비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인(○○○1), (○○○2)을 예비명부에 포함하였고, 2인 모두 최종 평가위원 7인에 선정되어 2020. 0. 00. 실시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에 참여하였다.

또한 2021. 0. 00.부터 2021. 0. 0.까지 ○○읍 ○○○○○ ○○○사업 기본 및 경관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과정에서도 평가위원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인(○○○3)을 예비명부에 포함하였으며, 역시 최종 7인의 평가위원 중 1인으로 선정되어 2021. 0. 00. 실시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화순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각 모집 공고문에서 명시한

1) 평가위원 ○○○ : ○○대학교 2016. 0. 00. 퇴직(대학 재직요건 미달)

2) 평가위원 ○○○ : ○○○ 박사, ○○○○대학교 ○○○○과 부교수 재직(심사분야 업무관련요건 미달)

3) 평가위원 ○○○ : 화순지역 ○○○(기술사 등 자격요건 미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선정되어 정성평가를 실시,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과 기술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3. 입찰공고와 다른 평가항목 및 배점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1. 입찰공고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를 해야 하며, 입찰공고에는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5장 제3절 4. 제안서의 평가편에 따르면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정량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는 총 20점이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량적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전체 정량적 평가 배점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여야 하고,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공고한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요소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요소와 평가항목별 배점,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2. 3. 10. 공고한 ○면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문에서 [표 1]과 같이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을 공고하였으나, 2022. 0. 0. 실시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는 당초 공고문과 다른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정량적 평가의 총 배점을 20점으로 배정하면서 평가항목 중 전문인력 보유상태의 배점을 배점한도인 30%(6점)를 초과하여 임의로 10점으로 배정하였다.

[표 1] ○면 ○○○○○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평가항목 현황

(단위 : 점)

구분	공고문상 평가항목 및 배점		실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합계		100		100
정량적평가 (20점)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좌동)	10
	경영상태	5	(좌동)	5
	수행경험(실적)	5	(좌동)	5
정성적평가 (60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해당분야 전문성	5	해당분야 전문성	5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25	용역수행 방법론 적정성	30
	진행상황 점검장치	5	공정관리의 적정성	5
	관련기술 이전 가능성	3	-	-
	사후관리의 적정성	7	사후관리의 적정성	5
가격평가(20점)		20		20

자료 : 화순군 제안서 평가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화순군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과 달리 임의로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임의 변경하여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과다 배점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3개 제안업체⁴⁾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를 진행,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4.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따라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주)○○○○○○○○○○○○, (주)○○○○○, (주)○○○○○○○○○○○○

따라서 화순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에 있어 평가위원 7인 이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당초 선정된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 예비평가위원으로 대체하여 최종 7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2. 10. 14. 화순군 ○○○ ○○○○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표 2]와 같이 평가위원 7인 중 6인만이 참석하였는데도 예비평가위원 1인을 소집하지 않고 참석한 6인으로만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표 2] 화순군 ○○○ ○○○○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참석결과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참석여부	비고
1	평가위원	○○○	○○대학교	교수	참석	
2	평가위원	○○○	○○대학교	교수	참석	
3	평가위원	○○○	○○대학교	교수	참석	
4	평가위원	○○	○○○○○○○○공사	실장	참석	
5	평가위원	○○○	○○○○○○공사	연구위원	참석	
6	평가위원	○○○	○○대학교	교수	참석	
7	평가위원	○○○	○○대학교	교수	불참	
예비1	예비위원	○○○	○○○○○○공사	연구원		
예비2	예비위원	○○○	○○○○○○공사	연구위원		

자료 : 화순군 제안서 평가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화순군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방법을 위반하여 정성적 평가를 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정성적 평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위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부여하여 제안서 평가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용역 적격심사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 대상자 화순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3. 0. 0. 감사일 현재까지 ○○과 ○○팀에서 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3장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

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¹⁾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6절 낙찰자 결정편에 따르면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마목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용역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 개찰 결과 예정 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 1순위 업체에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만약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즉시 차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1. 0. 00. 입찰공고번호 20210000000호 ○○○ ○○○○○공사(개선) ○○○처리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인 (주)○○○○에 대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를 개찰일로부터 7일 후인 2021. 0. 00.까지로 통보하였으나, 화순군(○○과)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마감일을 6일 경과하여 2021. 0. 00.²⁾에서야 제출한 심사서류를 접수하고

1) 가. 적격심사신청서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마. 그 밖의 제출서류

적격심사를 진행, 2021. 0. 00. (주)○○○○과 139,183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주)○○○○에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낙찰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야 할 (주)○○○○이 부당하게 낙찰업체로 선정되고 차순위 최저가 입찰업체인 (유)○○○○가 적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적격심사 계약업무를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을 경과한 적격심사 서류를 부적정하게 지연 접수한 업무 담당자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방해한 업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제출건 : ○○과-00000(2021. 0. 00.)호 접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참여감독자 미위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 공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

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공원공사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지방계약법」 및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추진되는지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해당되는 ○면 ○○○리(○○마을) ○○○ 설치공사 등 총 328건의 시설 공사 중 단 6건에 대해서만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별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 미위촉 명세”와 같이 322건(총 사업비 33,661,350천원)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하였다.

그로 인하여 화순군은 시공 과정에서 공사현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및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해 주민 편익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계약 행정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앞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적시에 반영되고 불법·부당한 시공을 감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략

는 모든 이들에게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게 노출되었다.

3. 원문공개문서 민원인 개인정보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³⁾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과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소, ○○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건에 대하여 [표]와 같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

3)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000(2015. 0. 00.), 원문공개 시행일인 2015. 0. 00.부터 시군은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되는 전자결재시스템 문서는 정보공개포털과 연계되어 자동 공개

용과 민원인 및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대국민공개로 처리함으로써 정보공개포털에 민원인의 이름, 주소, 민원 내용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표] 정보공개포털에 대국민공개된 문서 중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 현황

연번	연도	부서	문서제목	개인정보 포함내역
1	2020	○○과	지방도 000호선 보행로 설치 민원 조치 계획	이름, 민원내용
2	2020	○○○○○○소	고충민원(○ ○ 000 생활하수 처리) 보고	이름, 주소, 민원내용
3	2020	○○○○○○소	진정민원(다수인 민원) 검토 보고	이름, 민원내용
4	2020	○○○○○○소	고충민원(다수인 민원) 검토 보고	이름, 민원내용
5	2021	○○과	○○○○○ 관련 사유지 훼손 민원 처리 계획	이름, 주소, 민원내용
6	2022	○○과	개발행위허가 관련 진정민원 접수 처리 계획	이름, 민원내용
7	2022	○○과	○면 ○○○ 인도교 설치공사 민원 처리 계획	이름, 민원내용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전자문서 생산·접수 및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었으나,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감사 기간인 2023. 4. 6.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변경 조치하였으므로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니, 앞으로 전자문서를 생산·접수하거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통보(시정완료)]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예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등의 관리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산림청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¹⁾하여 기

1) 허가(신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
허가(신고) 기간 3년 이상 : 복구비용 산정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준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산지전용 시 허가 또는 신고 신청자에게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마다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산지전용 등 허가 관련 복구비 추가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14건, 39,585천원의 복구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1년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에 대해 재산정한 복구비 추가예치금 총 39,585천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출납원 소관 검사 미실시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과, ○○○○과, ○○○○과, ○○소, ○○○○○소)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을 지정하여 세출예산 집행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출납원 소관 검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회계책임관¹⁾을 임명하여야 하고, 「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화순군 회계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으

1) 「지방회계법」 제10조 제2항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책임관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2.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정하여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편에 따르면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간 1회 이상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정하거나 다른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해당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고,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단 한 차례도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지 않고,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지 않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4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계좌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

급하는 경우, 그 밖의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편에 따르면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라도 사용 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이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 ○○과, ○○○과, ○○○과, ○○소, ○○○○○소)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와 같이 총 9건, 15,655천원의 사무관리비를 집행하면서 직원 개인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거나,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사무관리비 부적정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적요	지급일자	지급금액	거래처명 (소속직원)	구분
합계	9건			15,655		
1	○○○○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하모니데이 급식비 지급	2021.00.00.	816	○○○ 등 34	현금 지급
2	○○과	2022년 상반기 직원 소통의 날 행사 급식비 지급	2022.00.00.	1,200	○○○ 등 50	현금 지급
3	○○○○과	2021년 하모니데이 추진 관련 식비 지급	2021.00.00.	768	○○○ 등 32	현금 지급
4	○○○○과	2022년 직원 소통의 날 추진 관련 식비 지급	2022.00.00.	696	○○○ 등 29	현금 지급

연번	부서명	적요	지급일자	지급금액	거래처명 (소속직원)	구분
5	○○○○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하모니데이 추진을 위한 식비	2021.00.00.	528	○○○ 등 22	현금 지급
6	○○소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보건소 하모니데이 지출	2021.00.00.	3,317	○○○ 등 14	개인카드 사용
7	○○소	2022년 상반기 직원 소통의 날 추진비 집행	2022.00.00.	3,542	○○○ 등 11	개인카드 사용
8	○○소	2022년 하반기 직원 소통의 날 행사 추진비 집행	2022.00.00.	3,540	○○○ 등 10	개인카드 사용
9	○○○○ ○○소	하모니데이추진을 위한 급식비 지급	2021.00.00.	1,248	○○○ 등 52	현금 지급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지출내역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회계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시정)
- ② 앞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처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표 1]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 추진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A=B+C)	공사 등 (B)				관급자재 (C)
		소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16,558	10,035	6,239	2,527	1,269	6,523
금액	515,943	354,285	235,041	79,586	39,658	161,658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관 ○○○은 2018. 0. 0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22. 0. 0.부터 2023.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사무관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2023.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대장 미작성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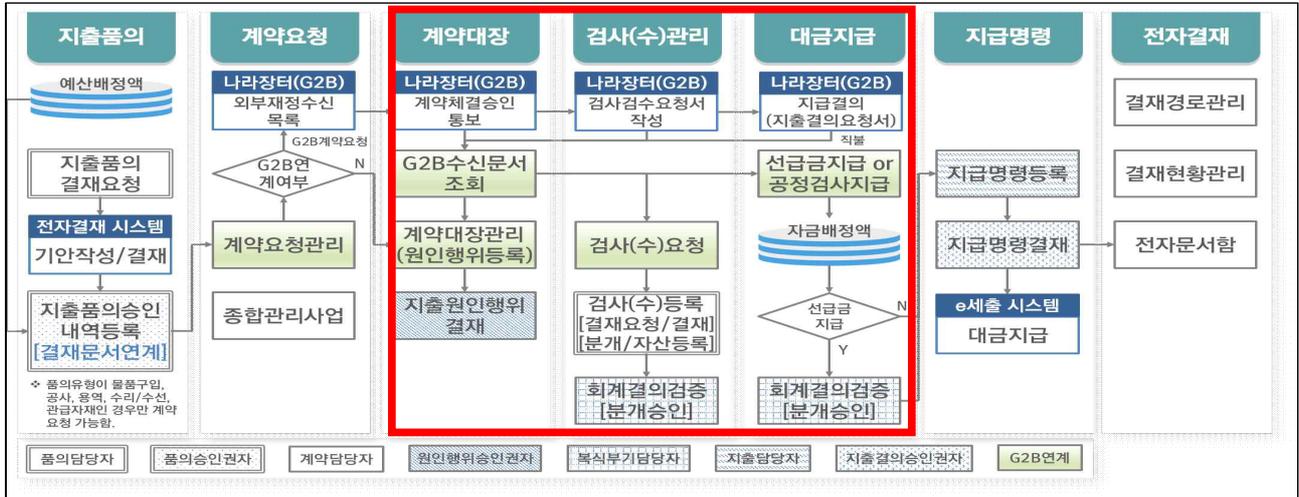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사항,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을 지정정보처리장치²⁾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³⁾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인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관리 매뉴얼”의 [표 2]와 같이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표 2] 계약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2장 제3절에 따라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구입 등 계약에 의한 지출을 할 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부서, 예산배정부서, 계약부서, 자금담당부서, 복식부기부서, 지출부서에서 계약대장 작성 등 각각의 계약정보 입력절차를 이행하고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 등 34개 실과소, 읍면)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 등록 명세”와 같이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구입 등 총 16,558건, 515,943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용역·물품대금 8,046건, 335,859백만원과 관급자재대금 6,523건, 161,658백만원 등 총 14,569건, 497,517백만원에 대해 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검수관리, 분개를 통한 자산등록, 공정검사지급 등의 계약정보 입력절차 이행없이 일반지출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검사(수)관리 과정에서 지출거래의 복식부기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 자산 등의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3.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계약실적 마감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에 관한 정보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서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은 계약대장 기준으로 계약실적자료를 생성하고 실적 마감처리 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과)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서 계약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계약실적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군(○○과)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8,046건, 335,859백만원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에서 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표 3] “계약실적보고서 제출 현황”⁴⁾과 같이 실제 계약실적과 불일치하게 마감 고시 현황⁵⁾ 517건, 13,340백만원과 마감 전체 현황⁶⁾ 2,048건, 19,821백만원을 계약실적으로 제출하였다.

[표 3] 계약실적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마감고시 현황		마감전체 현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517	13,340	2,048	19,821
2020	190	5,337	730	7,522
2021	143	3,311	549	4,898
2022	184	4,693	769	7,401

자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입력자료 추출 재구성(계약관리 > 결산관리 > 계약실적보고서 > 계약실적마감)

4) 건수·금액 산정기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 공사 1천만원, 물품·용역 5백만원 이상 기준으로 작성
 6) 공사, 물품, 용역 전체 건수 기준으로 작성

그로 인하여 계약정보의 투명성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재무제표 등 공시내 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지방관리시스템상 계약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사무관 ○○○, 지방○○사무관 ○○○,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4,569건에 대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며 (시정)
- ③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통보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훈계대상자 ① 화순군 ○○과 지방○○주사 ○○○

②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1. 00. 00. (주)○○○○○(대표 ○○○)와 “○○○○○○○○○○○○ 조성사업 잔여공사”를 3,611,842천원에 계약¹⁾하고 2022. 0. 0. 착공하여 2022. 00. 0. 공사를 완료하였다.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부터 2023. 0. 0.까지 ○○○과에서 위 사업 업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1) 사업규모 : 공사기간 2022.0.0.~00.0., 공사비 3,679백만원(도금액 3,612, 관급자재 67), 부지조성 00,000㎡, 건축 연면적(0개동) 0,000.00㎡(○○시설 0,000.00, ○○·○○시설 0,000.00, 폐기물창고 00.00 등)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제8절 및 제9절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이행으로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그 지체일수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2022. 00. 0.²⁾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접수하여 2022. 00. 00.까지 검사를 완료했어야 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 준공기일은 2022. 00. 0.(토요일)이나 00. 0.까지 연휴로 인해 2022. 00. 0. 준공계 접수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또한 명하지 않았다.

또한 2022. 00. 00. 민원발생 및 언론보도 등으로 화순군 자체검사를 실시하였고, 2022. 00. 0. 감사 결과 처분요구³⁾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2022. 00. 00. 준공검사를 무기한 연기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2023. 0. 00. 계약상대자가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인 2023. 4. 3.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82일이 경과되어 검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를 적기에 실시하며, 지연배상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③ 계약상대자가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부과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정 금액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처분요구 : 화순군 ○○○○실-00000(2022. 00. 0.)호. ① 관로 파손구간 및 현장 임의 타설한 구조물 재시공, ② 관로 바닥갈기 미시공 금액 3,133천원 회수,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별점 부과 및 주의 조치, ④ 관련 공무원 주의 통보 등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분할 발주 및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과, ○○○○과, ○○○○과, ○○과, ○○소, ○○○○○○소)

훈 계 대 상 자 ①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②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③ 화순군 ○○○○○실 지방○○주사 ○○○

④ 화순군 ○○면 지방○○주사보 ○○○

⑤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⑥ 화순군 ○○○과 지방○○주사 ○○○

⑦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⑧ 화순군 ○○면 지방○○사무관 ○○○

⑨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⑩ 화순군 ○○과 지방○○주사 ○○○

⑪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 ⑫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 ⑬ 화순군 ○○소 지방○○주사 ○○○
- ⑭ 화순군 ○○소 지방○○주사 ○○○
- ⑮ 화순군 ○○○○과 지방○○○○서기 ○○○
- ⑯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 ⑰ 화순군 ○○○○과 지방○○주사 ○○○
- ⑱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 ⑲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 ⑳ 화순군 ○○과 지방○○주사 ○○○
- ㉑ 화순군 ○○○○과 지방○○주사 ○○○
- ㉒ 화순군 ○○○○○○소 지방○○주사 ○○○
- ㉓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 ㉔ 화순군 ○○읍 지방○○주사보 ○○○
- ㉕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 ㉖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 ㉗ 화순군 ○○○○과 지방○○주사 ○○○
- ㉘ 화순군 ○○소 지방○○○○주사보 ○○○

㉔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㉕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㉖ 화순군 ○○면 지방○○주사 ○○○

㉗ 화순군 ○○과 지방○○주사 ○○○

㉘ 화순군 ○○○○○○소 지방○○주사보 ○○○

㉙ 화순군 ○○○○○○소 지방○○○○주사보 ○○○

㉚ 화순군 ○○○○○○소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사·용역·물품(관급자재 포함)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22. 0. 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21. 0. 0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2. 0. 0.부터 2022.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다.

지방○○사무관 ○○○은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 ○○○는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보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20. 0. 0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22. 0. 0.부터 2023.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는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19. 0. 00.부터 2023.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18. 0. 00.부터 2021.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서기 ○○○은 2021. 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는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방○○주사 ○○○는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보 ○○○은 2021. 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는 2020. 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19. 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3.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는 2021. 0. 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9. 0. 00.부터 2020. 0. 00.까지,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0. 0. 00.부터 2021.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는 2019. 00. 0.부터 2022. 0. 00.까지 ○○○소에서 근무

하였고, 지방○○주사 ○○○은 2019. 0. 00.부터 2021. 0. 00.까지 ○○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9. 0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20. 0. 0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사무관 ○○○은 2022. 0. 0.부터 2022. 0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다.

지방○○주사보 ○○○은 2020. 0. 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0. 0. 0.부터 2020.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22. 0. 0.부터 2022. 0. 00.까지 ○○○○○과에서 근무하였다.

2. 물품구매 시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3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화순군은 2020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경쟁 회피”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2명) 및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 ○○○○○○소)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별표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 구매 명세”와 같이 “○○○○○ 제작 및 설치” 등 7건(1,136백만원)의 단일 사업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이 되도록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17건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회피하였다.

그로 인하여 2단계 경쟁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113백만원(1,136백만원 × 10%¹⁾)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였다.

3. 공사·물품의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의 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10조 : 계약상대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에서 10%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하되 등록된 가격 이하로 제안

그리고 같은 기준에 용역·물품에 대하여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화순군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0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2020. 6. 24.) “관급자재 분할구입을 통한 2단계경쟁 회피”에 대해 관련 공무원 훈계(2명) 및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단일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고, 이를 일반입찰 하거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 ○○○○과, ○○○○과, ○○과, ○○소, ○○○○○소)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2] “분할계약 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22년 ○○○ ○○(○) ○○ ○○○ 구입” 등 14건(754백만원)의 단일 사업의 공사·물품에 대해 공사량·물품별 또는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2건의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과 30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계약 건 중 “2021년 ○○ ○○○○○○사업 참여자 ○○구입(○○○)” 등 4건(213백만원)의 물품 계약의 경우 ○○과에서 물품별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로 인하여 2인 이상 경쟁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60백만원(공사낙찰률 87.745%, 물품낙찰률 88% 적용²⁾)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2단계경쟁 회피 및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위 훈계대상자 35명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주의요구

제 목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 및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과, ○○과, ○○○○과, ○○○○과, ○○과, ○○○○센터, ○○○○○○소, ○○면, ○○면)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종 104개의 정수관리대상물품¹⁾을 재무과의 배정(승인)을 받아 취득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화순군 물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이 재무관에게 물품매입 요구 시 물품관리관은 정수관리대상물품 포함 여부 등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물품의 매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 정수 배정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후 그 물품의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하고, 취득한 물품을 전산화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2022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책정이 필요한 물품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4개 마을기업에 장비 및 재료구입 등으로 보조금 120,000천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표] 마을기업 지원 현황(2021년~2022년)

(단위 : 천원)

연도	마을기업명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개 마을기업	156,000	120,000	60,000	18,000	42,000	36,000
2021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표 ○○○)	36,000	30,000	15,000	4,500	10,500	6,000
	농업회사법인 ○○○○(대표 ○○○)	34,000	20,000	10,000	3,000	7,000	14,000
2022년	○○○○영농조합(대표 ○○○)	26,000	20,000	10,000	3,000	7,000	6,000
	○○○○○협동조합(대표 ○○○)	60,000	50,000	25,000	7,500	17,500	10,00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금 정산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II 마을기업의 관리 2.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편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보조금법」과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자체 조례(이하 “보조금

관련 법령”이라 한다)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 수령자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는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20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수령자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500%,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300%,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200%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500%,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300%,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200%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

○○○영농조합(대표 ○○○)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2022. 00. 00. 마을기업 육성사업 목적과는 다른 용도인 ○○○○시 ○구 ○○로 0000 ○○○에 대한 전기요금 1,397,7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397,700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고,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인 제재부가금 300%에 해당되는 4,193,1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는 등 보조금 반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3. 보조금 집행 업무 처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

월일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물품·용역 등을 공급받을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인 ○○○○○협동조합(대표 ○○○)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 등 4명으로부터 콩대두 등을 구입하면서 10,500천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보조금 집행 명세”와 같이 2개 마을기업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6명²⁾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보조금 15,000천원을 집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등이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을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중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397,700

2) 이번 감사기간(2023.03.29.~2023.04.06.) 동안 확인한 결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개인(농업인)으로 확인됨

원을 회수하고,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제재부가금 4,193,100원을 부과하며(시정)

② 앞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은 개인·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구입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 략

전라남도

징계·훈계요구

제 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소극 처리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징계대상자 화순군 ○○과 지방○○주사 ○○○

징계의종류 경징계

훈계대상자 화순군 ○○읍 지방○○사무관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는 2021. 0. 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과에서 2019. 0. 00.부터 2020. 0. 0.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자로, 2020.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으로부터 분양자료를 제출받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책을 강구하여 전남도로부터 통보받은 2020년 화순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이행하여야 하고,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 0. 00. ○○○○○○○○○○○○○○○(조합장 ○○○)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알리면서 2020. 0. 00.까지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²⁾하였으나 2021. 0. 00.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는데도 ○○○○○○○○○○○○○○○ 해산을 인가하여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2021. 0. 0. ○○○○○○○○○○○○○○○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 0월 전남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로 배치 가능하다는 공문³⁾을 회신받았다는 사유로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화순군 ○○과-00000(2020.00.00.),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분양자료 제출 요구(○○○○○○○○○○○○○○)

3) 전남화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000(2017.00.00.), ○○○○○○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전남교육청 행정과-0000(2017.00.00.),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의견 회신

그리고 2017. 0. 00. 화순군으로부터 ○○○○○○○○○○○○○○○○○에 대한 사업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2020. 0. 00. ○○○○○○○○○○○○○○○○○이 건설한 ○○○○○(00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21년 0월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⁴⁾입주자 반발 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학교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였고, 같은 해 0. 00. 공동주택분양자인 ○○○○○○○○○○○○○○○○○ 해산을 인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⁵⁾약 948,820천원의 부과 기회를 일실했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지방○○주사 ○○○은 2019. 0. 00.부터 2020. 0. 0.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자로, 2020.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 등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은 2020. 0. 00. ○○○○○○○○○○○○○○○○○(조합장 ○○○)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알리면서 2020. 0. 00.까지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2021. 0. 00. 공동주택 분양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였는데도 ○○○○○○○○○○○○○○○○○ 해산을 인가하여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2021. 0. 0. ○○○○○○○○○○○○○○○○○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 0월 전남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로 배치 가능하다는 공문을 회신받았다는 사유로 담당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학교 시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017. 0. 00. 화순군으로부터 ○○○○○○○○○○○○○○○○○에 대한 사업 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2020. 0. 00. ○○○○○○○○○○○○○○○○○이 건설한 ○○○

4) 분양자료 제출기한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2항 및 「학교용지법 시행령」 제5조2 제1항에 따라 분양공급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까지
5) 학교용지부담금(추정액) : 분양가격 118,602,545,455원 × 8/1,000 = 948,820,363원

○(000세대)에 대하여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21년 0월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 입주자 반발 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학교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였고, 같은 해 0. 00. 공동주택분양자인 ○○○○○○○○○○○ 해산을 인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약 948,820천원의 부과 기회를 일실하여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징계요구 양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 처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처리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 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 처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처리하여 업무를 태만히 한 지방○○주사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하고(징계)
- ②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극 처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 처리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사무관 ○○○를 훈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등 지방세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1] 지방세 부과·징수현황(2020년~2022년)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2020	99,590	95,844	574	3,172
2021	117,566	113,905	424	3,237
2022	96,952	93,357	667	2,928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남도는 2021. 0. 00.부터 같은 해 0. 0.까지 화순군 세정업무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2021. 0. 0. 화순군에 그 결과를 통보¹⁾하면서 ○○○○이 고유업무인 육묘장²⁾ 조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0. 0. 0. 취득한 후 감면받은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어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화순군은 ○○○○이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세를 감면받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고,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 0. 0. ○○○○이 취득한 ○○읍 ○리 0-0 등 6필지를 육묘장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2023. 4. 4. 감사일 현재까지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에도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감사기간(2023. 3. 29.~2023. 4. 4.)동안 감사관이 지적하자 2023. 4. 5.에서야 [표 2]와 같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 148,909천원을 전액 징수하는 등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2] 감면분 취득세 추징 현황

(단위: 원)

연번	과세대상	납세자	취득일	취득세 감면분 추징세액			사유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계	6필지(4,951㎡)			148,909,320	137,181,330	11,727,990	
1	○○읍 ○리 0-0 외 0필지(0,000㎡)	○○○○ ○○○○	2020.00.00.	115,328,100	106,244,940	9,083,160	고유업무 미사용 (육묘장 조성)
2	○○읍 ○리 0 외 0필지(0,000㎡)	○○○○ ○○○○	2020.00.00.	33,581,220	30,936,390	2,644,830	고유업무 미사용 (육묘장 조성)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지목변경 등 취득세 부과 소홀

1) 전라남도 세정과-0000(2021. 0. 0.), 화순군 세정컨설팅 결과 통보

2) 육묘장(育苗場) : 어린 모나 묘목을 키우거나 기르는 곳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등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³⁾ 및 제10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고 있으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⁵⁾의 경우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3) 제2항 :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

5) 조심2015지0762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 등으로 일정량 이상의 오수가 증가되는 경우 사업부지 외부에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등 장래에 발생될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간접비용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하였는데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가설)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하수도 원인가부담금을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과세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3] 및 [별표 1] “취득세 미부과 세부 명세”과 같이 ○○○ 등 7건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 등 25건에 대하여 하수도원인가부담금에 대하여, (주)○○○○○ 등 7건에 대한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총 39건에 대하여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 29,386천원을 부과하지 않아 공정한 과세원칙이 저해되고 지방세수 확보 기회를 상실되게 하였다.

[표 3] 취득세 미부과 현황(2020년 3월 ~ 2023년 2월)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미부과 세액
계		39	29,386
취득세	지목변경 미신고 취득세 추징	7	6,567
	하수도원인가부담금 미신고 취득세 추징	25	16,459
	미신고 가설건축물 취득세 추징	7	6,36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지방교육세 포함)

4. 토지형질변경 등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관련 면허를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면허 부여 시의 납세 확인을 위하여 면허부여기관은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등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 등록면허세 부과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4] 및 [별표 2] “등록면허세 미부과 세부 명세”와 같이 ○○○ 등 27건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유한회사 ○○○○○ 등 6건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하여, (주)○○○○○ 등 28건의 굴착행위신고 등 총 61건, 총 1,251천원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공정한 과세원칙을 저해하고 있다.

[표 4] 등록면허세 미부과 현황(2020년 5월~2023년 2월)

(단위: 건, 천원)

세목	부과대상	건수	미부과 세액
		61	1,251
등록면허세	토지형질변경 추정	27	639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추정	6	108
	굴착행위 신고 추정	28	504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지방교육세 포함)

또한 ○○○○과 및 ○○과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하수 굴착 행위 신고 면허 및 굴착행위 신고 등 면허 부여 및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고 있는 등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과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지방세 세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부과 누락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100건 30,637천원을 부과하고(시정)
- ② 앞으로 ○○○○과 및 ○○과는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과로 관련 과세자료를 누락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 편입용지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훈계대상자 ①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②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방○○사무관 ○○○은 2019. 0. 00.부터 2021. 0. 0.까지 ○○○○과에서 ○○○○○○○○ ○○○ 위수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 ○○○ 위수탁 업무 담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주사보 ○○○은 2020. 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 ○○○ 위수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 편입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

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¹⁾을 말하며, 제3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이라도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관리관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순군은 2006년 ○○읍 ○○리 산00번지 일원에 ○○○ ○○○ 조성

1) 1. 공용재산: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을 위한 화순군 계획시설(○○시설, ○○○)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공유재산(군유지)의 편입을 인가하였다.

[표 1] ○○○ ○○○ 편입 공유재산 현황

물건	지목	현재 재산종류	편입 당시 소관부서	사용 용도
○○필지(0,000㎡)				
○○읍 ○○리 000-0 등 0필지(0,000㎡)	임야	행정재산	○○○○과	○○○
○○읍 ○○리 000-0 등 00필지(0,000㎡)	전, 답	행정재산	○○○○과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화순군은 공유재산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용도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여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06년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읍 ○○리 000-0 등 임야 등 0필지가 ○○○ ○○○으로 편입되어 ○○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방치하고 있고, 재산관리관을 ○○○○과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과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지 않고 있고, 2006년 ○○○ ○○○ 조성 편입토지인 ○○읍 ○○리 000-0 등 00필지(0,000㎡)가 [별표 1] “공유재산 현황지목 불일치 명세”와 같이 공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다른데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에서 군유지 ○○읍 ○○리 산00 등 0필지를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하여 ○○○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하여 [별표 2] “무단점유 공유재산 변상금 산출 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변상금 118,667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 ○○○ 위수탁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순군은 화순군 ○○면 ○○로 000에 소재한 ○○○○○○○²⁾내에 ○○○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시설 및 면적 : ○○○ 0,000㎡, ○○○○ 000㎡, ○○○○○(○○○ 주변지역)

[표 2] ○○○○○○○○ ○○○ 위수탁 운영 현황

물건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금액(원)
화순군 ○○면 ○○로 000 ○○○○○○○내 ○○○	○○면 ○○로 ○○○	2020.00.00. ~ 2024.00.00. (0년간)	연 10,000,00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화순군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로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 0. 00.³⁾에 2020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⁴⁾하는 방법으로 위탁자를 직전 위탁자(○○○)의 자녀(○, ○○○)을 부당하게 선정하였다.

또한 매년 위탁료를 수탁자의 예상수익과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지 않은 채 연간 위탁료를 매년 10,000천원으로 계약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총 20,000천원의 위탁료를 전액 감액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 ○○○ 위수탁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 편입토지 00필지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재산관리관을 ○

3) ○○○○○○○○ ○○○ 위수탁 운영 기간 연장 (○○○○과-0000 / 2020. 0. 00.)

4) 2020년 제2회 화순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알림(서면심의) (○○과-00000 / 2020. 0. 00.)

- 심의안건 : 공유재산관리 위탁사업 계약 갱신(○○○○○○○ ○○○ 위탁 운영기간 갱신)

○○○과장에서 ○○과장으로 변경하며, 지목변경을 하고, ○○○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임야 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118,667천원을 부과하며(시정)

③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하여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재산관리 및 변동 사항을 기록하며, ○○○○○○○○ ○○○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대금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내수면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양식단지를 분양하였다.

[표 1] 내수면 양식단지 분양 현황

(단위 : m²)

토지소재지	면적	지목	용도	피분양자
화순군 ○○면 ○○리 000, 000, 000, 000	0,000.0	양어장	양식시설	○○○○○○(주) ○○○
화순군 ○○면 ○○리 000, 000, 000	0,000.0	양어장	양식시설	○○○○(주)
화순군 ○○면 ○○리 000, 000, 000	0,000.0	양어장	양식시설	○○○○○○(주)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 내수면 양식단지 양식장용지 분양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피분양자는 계약금으로 분양가 총액 중 100분의 10을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고, 중도금은 분양가 총액 중 100분의 40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며, 최종 잔금은 분양가 총액 중 100분의 50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납입고지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분양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피분양자가 제3조의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피분양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 다음날

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연체료)을 분양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분양계약서 제10조와 11조에 따르면 부지의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피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액 금고에 귀속하고, 납부한 중도금 및 잔금은 이자(연체이자 포함), 공공요금 등 기타 분양자가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피분양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법 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때에는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분양계약서 제10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피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은 전액 금고에 귀속하고, 납부한 중도금과 잔금이 있으면 이자(연체이자, 지연손해금)를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하며,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이자 등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부 등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2. 0. 0. 내수면 양식단지 양식장용지 피분양자에 대하여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6개월 이상 연체했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피분양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징수하여

야 하는데도 [별표] “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징수 명세”와 같이 ○○○○○○
○(주) ○○○과 ○○○○(주)에게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반면, 2022. 0. 00. ○○○○○(주) ○○○에게는 부과한 중도금과 잔금을
전액 부과취소¹⁾하여 [표 2] “계약해제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 누락 현황”과 같
이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2,974천원을 부과 누락하였다.

[표 2] 계약해제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과 누락 현황

(단위: 일, 천원)

피분양자	구분	부과액	연체일	지연손해금(연체료) 부과 ²⁾ 예상액
○○○○○(주) ○○○	계	650,184		52,974
	중도금(40%)	288,971	256	27,511
	잔금(50%)	361,213	196	25,463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화순군은 ○○○○○(주) ○○○이 계약 후 이행 착수 전에 분양대금 및 지연
손해금 미납에 따라 계약해제 되었으므로, 「민법」 제565조³⁾에 따라 계약금만 귀
속하고 종결하였고, 형평성이 저해된다 하더라도 계약서 제11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
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화순 내수면 양식단지 양식장용지 분양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피
분양자가 제3조의 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피분양자는
채납한 금액에 대하여 납기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연체료)을
분양자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교환차금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1) (부과일) 중도금 2021. 0. 00. 잔금 2021. 0. 00. / (부과취소일) 중도금 및 잔금 2022. 0. 00.

2) 지연손해금(연체료) = 중도금(잔금) × 연체료율(12~15%) × 연체일/365

3) 「민법」 제565조(계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
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 ○○○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화순군의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화순군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이 저해되더라도 계약서 관련 규정으로 지연손해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화순군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화순 내수면 양식단지 양식장용지 분양계약서」에 따라 부과 누락된 내수면 양식장 용지 계약 해제에 따른 지연손해금 52,974천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① 화순군 ○○○○○실 지방○○주사 ○○○

② 화순군 ○○면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을 통보받아 조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1. 0. 0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19. 0. 0.부터 2021. 00. 00.까지 ○○○○과에서 화물·여객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2. 유가보조금 의심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처분 등 유가보

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제1항 각 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2.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 4.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통보받은 부정수급 의심되는 거

래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환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1]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FSMS)으로 통보받은 의심거래 신고 명세”와 같이 ○○에 대한 000건의 의심 거래신고를 제공받았으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 행정상 제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방치하였다.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의무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 보유자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지체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 제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¹⁾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기간²⁾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84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0만원 이하의 과태료³⁾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3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보험개발원 제공)을 해당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은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 등 가입명령서(또는 가입촉구서)를 발송

2) 일정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관련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별표 15의 2)을 말함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 2년) 등

3)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따라서 화순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을 가입할 것을 명하고, 미가입한 일수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2] “자동차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차량 과태료 부과 누락 명세”와 같이 ○○○ 소유의 00마0000 차량 등 00대가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1,8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 소유의 000고0000 차량 등 0대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데도 5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조사 및 행정상 제재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을 훈계하고(훈계)
- ② 부과 누락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28건 2,460천원을 부과하며(시정)
- ③ 앞으로 유가보조금 의심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행정처분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① 화순군 ○○면 지방○○주사 ○○○

②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원예시설의 현대화 지원을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표 1]과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44건, 22억원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표 1]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현황(2020년~2022년)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조사업자	44	15	14	15
총사업비	2,249,604	784,417	828,199	636,988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보 ○○○은 2020. 0. 0.부터 2023. 0. 0.까지 ○○○○과에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업무 담

당자로 근무하였다.

2.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편에 따르면 원예시설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III.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편에 따르면 시·군은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시·도에 제출하고,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의 원예시설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1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표 2]와 같이 2021. 0. 0. ○○○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신청일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1. 0. 0. 보조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49,477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22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표 2]와 같이 사업신청자 ○○○로

부터 2022. 0. 00. 사업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신청일 1년 전이 아닌 약 5개월 전인 2021. 0. 00.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는데도 보조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선정하여 26,404천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 부적정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신청일	사업자선정일	농업경영체 등록일	부적정 사유
합계	2명		75,881				
2021	○○○	○○시설	49,477	2021.00.00.	2021.00.00.	2021.00.00.	사업요건 미충족
2022	○○○	○○○○시설	26,404	2022.00.00.	2022.00.00.	2021.00.00.	사업요건 미충족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한 부적정 지원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1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에 따르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1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별표] “2021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사업예산 범위 초과 부적정 명세”와 같이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예산은 전체 사업비 828,199천원의 30%인 248,460천원 이하로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전체 사업비의 51.7%인 428,357천원을 지원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사업자격이 없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총 사업비 배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배분 비율을 준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내수면 양식시설 허가·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에 대하여 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무허가 내수면 양식시설 운영 방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유수면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양식업권자나 허가양식업자는 그 양식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양식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양식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 또는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하려고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이나 양식수산물을 철거하도록 하여야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표 1]과 같이 2023. 4. 6. 감사일 현재 ○○○ 등 2명이 화순군 ○○면 ○○리 000-0 등에 0개소를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면 양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표 1] 무허가 내수면 양식시설 운영 현황

(단위 : m²)

운영자	무허가 내수면 양식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양식물	주요시설물
2명	4개소	0,000		
○○○	화순군 ○○면 ○○리 000-0	0,000	우렁이	비닐하우스 및 수조
	화순군 ○○면 ○○리 000-0	0,000	우렁이	비닐하우스 및 수조
○○○	화순군 ○○면 ○○리 00, 00-0	000	우렁이	수조
	화순군 ○○면 ○○리 000-0	0,000	우렁이	비닐하우스 및 수조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은 육상수

조식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과 같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사료찌꺼기·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에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 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육상의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의 수조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육상내수면양식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 등 4명에게 육상내수면양식시설 5개소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하면서 [표 2]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허가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육상 수조식 내수면양식시설 어업허가 부적정 처리 현황

(단위 : m²)

허가일	허가기간	피허가자	양식방법	시설위치	시설면적	수조면적	양식대상
계		5개소			17,268.0	17,021.0	
2021.00.00.	2021.00.00.~ 2024.00.00.	○○○	육상수조식 내수면양식어업	화순군 ○○면 ○○리 000-0,0	4,565.0	3,792.3	왕우렁이
2021.00.00.	2021.00.00.~ 2024.00.00.	○○○	육상수조식 내수면양식어업	화순군 ○○면 ○○리 000-0	1,505.0	1,269.5	왕우렁이
2021.00.00.	2021.00.00.~ 2024.00.00.	○○○	육상수조식 내수면양식어업	화순군 ○○면 ○○리 000-0,0,0	5,999.0	5,558.4	왕우렁이
2021.00.00.	2021.00.00.~ 2026.00.00.	○○○	그 밖의 내수양식업	화순군 ○○면 ○○리 000-0	1,969.0	763.8	왕우렁이
2023.00.00.	2023.00.00.~ 2028.00.00.	○○○○ (○○○)	그 밖의 내수양식업	화순군 ○○면 ○○리 00	3,230.0	5,637.0	왕우렁이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내수면 양식시설 무허가 운영시설은 철거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육상수조식 내수면 양식시설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제19호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화순군 ○○○○○○소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군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하고 관정의 규모별로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21. 0. 0.부터 2022. 0. 0.까지 ○○과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가 허가·인가 등이 취소,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정한 기간을 두고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15. 0. 00.부터 2023. 0. 00.까지 [별표 1]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도과 및 사전안내 미이행 명세”와 같이 (주)○○○○○○○○ 등 27건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적게는 18일, 많게는 2,784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원상복구를 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3.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표]와 같이 수질검사를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¹⁾의 수질검

1) 지하수 수질검사 전문기관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 현황

용도	구분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모든시설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 :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인 경우 :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농업·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마다 1회

자료 : 「지하수법」 일부 발췌

또한 같은 법 39조에 따르면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대상자가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수질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질검사주기에 따라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하수 수질검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 명세”와 같이 정기 수질 검사대상 503개소 중 ○○○ 등 224개소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①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 업무 및 지하수 정기 수질오염도 검사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를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안내하여 연장이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대상 지
하수 개발·이용자가 수질검사 주기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개선요구

제 목 먹는 물 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군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5개소, 마을상수도 36개소, 소규모급수시설 5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및 정수기 사용업소 18개소를 신고 수리 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등 운영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21조 제7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2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은 [표 1]과 같이 시설 규모에 맞게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시설규모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현황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50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10만㎡ 이상 5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2009년 1월 1일부터

시설규모(일)	배치기준	적용시기
2만㎡ 이상 5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2009년 7월 1일부터
5천㎡ 이상 2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5백㎡ 이상 5천㎡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2010년 7월 1일부터

자료 : 「수도법 시행령」 일부 발췌

그리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순군은 2023. 4. 6.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읍정수장 등 5개의 정수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표 2] 화순군 정수시설 운영 현황

(단위 : m³/일)

시설명	위치	용량	급수개시일
○○읍정수장	○○읍 ○○로 000	5,000	1900.00.00.
○○·○○정수장	○○면 ○리 산00-0	2,000	2000.00.00.
○○정수장	○○면 ○○리 산00-0	2,000	2000.00.00.
○○정수장	○○면 ○○리 000	900	1900.00.00.

○○정수장	○○면 ○○리 산00-0	2,000	1900.00.00.
-------	---------------	-------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화순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읍정수장 등 5개소 정수장에 배치기준에 맞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정수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등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3. 4. 6. 감사일 현재 ○○읍정수장 등 5개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1명, 3급 5명 등 총 6명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읍정수장에 3급 2명만 배치한 채 정수장 운영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3] 화순군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부적정 현황

(단위 : m³/일, 명)

시설명	용량	법정 배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현황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합계		6	-	1	5	2	-	-	2
○○읍정수장	5,000	2	-	1	1	2	-	-	2
○○·○○정수장	2,000	1	-	-	1	-	-	-	-
○○정수장	2,000	1	-	-	1	-	-	-	-
○○정수장	900	1	-	-	1	-	-	-	-
○○정수장	2,000		-	-	1	-	-	-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0년 3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정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등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1] “정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미이행 명세”와 같이 ○○읍정수장 근무자 ○○○ 등 13명의 정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3.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관리자¹⁾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의 위생

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법」 제3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시설 안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먹는물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등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하여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0년 4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규모수도시설 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3분기에 1회, 2022년 1분기에 1회만 실시하고 2020년 1분기 등 총 9분기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1) 마을상수도는 화순군수, 소규모급수시설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로 마을이장으로 지정함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 종사자 건강검진 미이행 명세”와 같이 ○○○ 등 소규모급수시설 57개소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4.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 선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를 위해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은 화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0년과 2021년 수돗물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 대상과 지점 선정을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하였다.

5.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정수기 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6의3호에 따르면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²⁾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대규모점포,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학원,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실내주차장,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체

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의2호에 따르면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고, 제1호에 따르면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이며, 냉·온수기 관리방법으로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고온·고압 증기 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모든 영업장(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에 대한 정기지도·점검할 때에는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장소의 적정성,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관리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에 대하여 설치·관리자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를 받아 설치금지장소의 적정성 및 관리 방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0년 4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3]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미신고 명세”와 같이 화순○

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등

○○○○○ 등 25개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4]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점검 미실시 명세”와 같이 화순○○○○○○ 등 미신고 사업장 25개소와 ○○○○○○○○ 등 신고 사업장 18개소 등 총 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고,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치하였다.

6. 동파 수도계량기 조례개정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38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 공급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에 따르면 수도계량기 동파는 한파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개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통보하였고, 환경부는 2014. 12. 18.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로서 수도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교체하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제도개선 내용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수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법정 기준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관리자로부터 설치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하고(시정)
- ② 앞으로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먹는 물 관련 시설 종사자는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등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수돗물 정기검사 대상 및 지점 선정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냉·온수기 및 정수기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며(주의)
- ③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화순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상 개선)

[별표 1] ~ [별표 4]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담배소매업 및 전기발전사업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 훈 계 대 상 자 ① 화순군 ○○○○과 지방○○주사 ○○○
- ② 화순군 ○○과 지방○○주사 ○○○
- ③ 화순군 ○○○○○○소 지방○○주사보 ○○○
- ④ 화순군 ○○○○○실 지방○○서기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판매를 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 269개소를 지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승인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주사 ○○○는 2020. 0. 0.부터 2021. 00. 00.까지 ○○○○○실에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0. 0.까지 ○○○○○실에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보 ○○○은 2019. 0. 00.부터 2022. 0. 00.까지 ○○○○○실에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서기 ○○○는 2022. 0. 0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일까지 ○○○○○실에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3호에 따르면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의3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춘 요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담배소매업 지정 이후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점포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의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미충족 명세”와 같이 담배 매입실적이 90일 이상 없는 담배소매인 ○○○○○○ 등 총 146개소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는데도 청문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7호에 따르면 군수는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 해당하면 1차 2개월, 2차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약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화순경찰서는 화순군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신분증 미확인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등 도용한 내용을 명시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고, 2021. 0. 00.부터 2022. 0. 00.까지 [표 1]과 같이 ○○○○○○ 점 등 4개 업소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표 1] 화순경찰서 청소년 담배 판매 위반사실 통보 현황

담배소매인 업소명	소재지	통보일	위반사실
4개 업소			
○○○○○○○점	○○읍 ○○로 000	2021.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점	○○읍 ○○로 000	2021.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점	○○읍 ○○로 000	2022.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담배 판매
○○○○○점	○○읍 ○○○길 00	2022.00.00.	청소년 담배 판매
		2022.00.00.	
		2022.00.00.	
○○○○○점	○○읍 ○○로 000	2022.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화순군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판매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차 2개월, 2차 3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2021. 0. 00.부터 2022. 0. 00.까지 [표 1]과 같이 화순경찰서로부터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로 통보 받은 ○○○○○○점 등 4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인데도 1개소만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표 2]와 같이 ○○○○○○점 등 3개소에 대하여 2023. 4. 6. 감사일 현재 까지 영업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 2]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미처분 현황

담배소매인 업소명	소재지	통보일	위반사실
3개 업소			
○○○○○○○점	○○읍 ○○로 000	2021.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점	○○읍 ○○로 000	2021.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점	○○읍 ○○로 000	2022.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점	○○읍 ○○로 000	2022.00.00.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4. 전기발전사업 행정처분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호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연료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한다(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연료전지의 준비기간은 4년)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3년의 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전기발전사업 준비기간 도과 명세”와 같이 ○○○○○ 태양광발전소 등 310개소가 3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13일에서 최대 4,572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청문 등 사업허가 취소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는데도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 지방○○주사 보 ○○○, 지방○○서기 ○○○를 훈계하고(훈계)
- ②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 허가취소 대상 146개소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발전사업 허가 취소 대상 310개소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허가를 취소하며(시정)
- ③ 앞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통보

제 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인허가·지도·점검 업무를 추진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

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환경부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표 1]과 같이 처리용량, 등급, 지역에 따라 연 1~4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점검 횟수 현황

(단위 : 횟수)

등급	지역		수변·특정지역	기타지역
	우수관리	일반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2m ³ /일 초과. 단, 수변·특대지역은 1m ³ /일 이상 등)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³ /일 미만	2 1	1 1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³ /일 미만	2 1	2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m ³ /일 이상 2. 처리용량 50m ³ /일 미만	4 2	2 2

자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 발췌

따라서 화순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 1회부터 4회까지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표 2]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10,79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별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명세”와 같이 2020년 43개소, 2021년 6개소, 2022년 10개소 등 총 59개소만 지도·점검하였고, 그 중 50m³/일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20년 38회, 2021년 2회, 2022년 3회로 총 43회에 그치는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지도·점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표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시설용량(m ³ /일)	설치 운영 현황		시설용량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합계	10,796	100	28,537	100%
50 이상	65	1	9,480	33%
40 이상 ~ 50 미만	40	0	1,763	6%
30 이상 ~ 40 미만	78	1	2,394	8%
20 이상 ~ 30 미만	119	1	2,530	9%
10 이상 ~ 20 미만	251	2	3,025	11%
10 미만	10,243	95	9,345	33%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50m³/일 이상은 65개소로 전체 10,796개소의 1%에 불과하나, 시설용량 합산 시 전체의 33%를 처리함으로 대용량 시설을 우선 지도·점검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읍,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농업법인 등이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영농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신청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사후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를 할 경우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

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농업법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¹⁾를 벗어나면 해당 법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로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며, 이 경우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1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매매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이 명시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였는지를 일정 기간을 두고 행정정보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매년 실시하는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읍,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별표 1] “농지 취득한 농업법인 등기사항을 미변경한 법인 명세”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유한회사 ○○○○○○○○ 법인 등 8개 법인이 85필지, 128,915㎡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소유권 취득 전 등기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범위 외 사업을 등기상 포함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3.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영농조합법인 사업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 등을 조회하여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가 기소유한 면적의 합한 면적을 확인하여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읍, ○○면, ○○면, ○○면, ○○면, ○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데도 ○○○○시 ○구 ○○로 0000번길 00에 거주하는 ○○○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1,560㎡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별표 2]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1,000㎡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명세”와 같이 15세대가 소유 상한 면적 1,000㎡를 초과한 32필지 20,113㎡의 농지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부동산 임대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등기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15세대가 취득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하여 휴경 등으로 농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시정)
- ② 앞으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소유 상한 면적을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 [별표 2] 생 략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옥외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디자인법」 제5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종합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인력 육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군계획을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디자인법」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공디자인법」 및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화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13년 0월 화순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변경 수립하지 않았다.

3.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재원은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기금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군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화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같은법 제6조의2의 용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과 그 밖에 화순군수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기금은 군 조례에서 명시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운영하지 않았고, [표]와 같이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액 249,293천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지 못한 채 화순군 세외 수입으로 편성·운영하였다.

[표] 화순군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수수료	과태료
합계	249,293	91,520	157,773
2020년	129,049	26,342	102,707
2021년	85,800	30,734	55,066
2022년	27,169	27,169	-
2023년	7,275	7,275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화순군은 2024년부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액 249,293천원을 옥외광고 산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앞으로 「공공디자인법」 등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변경 수립

하고(시정)

② 「옥외광고물법」등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며,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 과태료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2. 1. 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시행과 관련하여 2022. 2. 1.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따르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화순군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0. 0. 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부군수를 지정·관리하였고, 2022. 0. 0. 인사발령으로 신임 부군수가 전입하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관리하지 않았으며, 2022. 00. 00.에서야 부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약 9개월 동안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또한 화순군(○○과)은 보건관리자 선임을 대신하여 (재)○○○○○○소에 2021. 0. 0.부터 2021. 00. 00.까지 위탁¹⁾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나, 2022. 0. 0.부터 2022. 00. 00.까지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고, 중대재해팀 신설(2023. 1. 2.)로 중대재해 관련 업무가 ○○과에서 ○○○○과로 이관된 후 (재)○○○○○○소에 위탁관리(2023. 0. 00. ~ 00. 00.)하여 약 13개월 동안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3. 도급·용역·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미조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

1) 중대재해팀 신설로 2023. 0. 0. 화순군 ○○과에서 ○○○○로 업무 이관되어 2023. 0. 00. 보건관리 위탁용역(계약기간 2023. 0. 00. ~ 2023. 00. 00.)을 (재)○○○○○○소 ○○○○소와 체결

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2022. 3.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체결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검토하고 조치할 사항은 [그림] “도급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예시”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도급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 활동 예시

계약	① 도급·용역·위탁 업무 검토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입찰	▲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④ 도급업체 계약	▲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 조건 명시)
수행	⑤ 도급·용역·위탁 업무 계약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정보제공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안전 작업허가제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경보체계, 대피 등 합동 훈련 ▲ 위생시설 등 장소 제공(이용 협조)
종료	⑥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	▲ 안전보건 업무 평가

따라서 화순군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및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도급, 용역, 위탁 업무 계약 입찰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부적격 수급업체 등을 선정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과, ○○○○과, ○○과, ○○○○○○○소)

훈계 대상자 ① 화순군 ○○○○과 지방○○사무관 ○○○

② 화순군 ○○○○실 지방○○주사 ○○○

③ 화순군 ○○○○○○○소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신규 일반투자사업에 대하여 일정 규모¹⁾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순군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창출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1]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일반투자사업 기준) ① 자체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② 시·도의뢰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③ 중앙의뢰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행사성사업 기준) ① 자체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② 시·도의뢰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③ 중앙의뢰심사 : 시·군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

[표 1]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사업현황(2022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위치	사업면적	총사업비	사업기간	공모사업 선정일
계	2개소			472		
1	○○ ○○마을 조성	○면 ○○리 000-0번지 일원	00,000㎡	222	2022.00. ~2026.00.	2022.00.00.
2	○○ ○○정비	○면 ○○리 ○○단지 일원	00,000㎡	250	2022.00. ~2026.00.	2022.00.0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화순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가지 주차 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표 2]와 같이 시행하고 있고,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3]과 같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5건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2] ○○읍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현황(2020년 12월 ~ 2023년 2월)

(단위 : 억원)

위치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계획 수립일	예산 편성	전남도 투자심사	추진상황
○○읍 ○○리 000번지 등	토지매입 0,000㎡ 주차장면 000면	160	2021.00. ~2024.00.	2020.00.00.	50억원 (2022본예산)	미실시 (2023. 2. 재검토)	용지보상 중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화순군 자체 투자심사 미실시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억원)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 건수	5	1	1	2	1
예산	160.9	27.3	20.8	79.8	33.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사무관 ○○○은 2020. 0. 0.부터 2021. 0. 0.까지 ○○○○과에서 ○○○○ ○○○○ ○○○○센터 지원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2. 0. 00.까지 ○○○○○실에서 ○○○○

○○ ○○○ 지원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에서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2건) 중앙 투자심사 미 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군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투자심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심사대상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투자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하여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의뢰 시기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 심사는 매년 4회²⁾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지방재정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모사업인 경우 공모선정 후 투자사업의 총사업비의 기준금액별 심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표 4]와 같이 ○○○○○○○사업 등 2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면 총사업비가

2) (심사의뢰 시기) 제1차 1.1.까지, 제2차 3. 31.까지, 제3차 6. 15.까지, 제4차 8. 25.까지

200억원 이상이므로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 본예산 등에 총 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표 4]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추진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억원)

연번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계획수립 (공모 신청)	공모사업 선정일	예산 편성		행안부 투자심사 여부	추진상황
					시기	편성액		
계	2개소	472				95.1		
1	○○ ○○ ○○ 조성	222	2022.00.00.	2022.00.00.	2022 제3회추경 2022 제1회추경	12.0 42.5	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2	○○○○○○○	250	2022.00.00.	2022.00.00.	2022 제3회추경 2022 본예산	16.2 24.4	부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사업은 2022. 00. 00. ○○○○○○○(화순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 ○○○○ 조성사업도 ○○○○○○사업과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전남도 투자심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군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은 시·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하 “투자심사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르면 심사대상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투자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하여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의뢰 시기는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정기 심사는 매년 4회³⁾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⁴⁾에서 투자심사 미실시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와 시정요구를 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재정 패널티 부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화순군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 투자심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0. 00. 00. ○○읍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총사업비가 160억원이면 전라남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고, 2021. 0. 00. 화순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군비) 5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주차장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대하여 2022. 0. 00. 화순군 군관리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고, 사업대상지 소유자의 신속한 보상 요청과 재정 신속집행 사유로 같은 해 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읍 ○○리 000번지 외 0필지(0,000㎡)에 대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⁵⁾하였다.

그리고 2022. 00. 0. 전라남도에 2023년 제1차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3) (심사의뢰 시기) 제1차 1. 1.까지, 제2차 3. 31.까지, 제3차 6. 15.까지, 제4차 8. 25.까지

4) ○○시·○○시·○○군·○○군, 2021. 00. 0. ~ 2021. 00. 00.

5) (보상금) 2,650,959천원 ① 2022. 00. 00. 2,300,805천원(○○리 000-0번지, 0,000㎡) ② 2023. 0. 00. 350,154천원(○○리 000번지, 000㎡)

2023. 0. 00.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심사 결과는 주차장 교통수요 조사 미흡 등의 사유로 재검토 의견을 받았다.

4. ○○○○○○ ○○○○○○사업 등 자체 투자심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시·군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 일반투자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심사대상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등 투자사업 관련 모든 경비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수립하여 심사기관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⁶⁾에서 투자심사 미실시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와 시정요구를 하였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재정 패널티 부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화순군은 신규 일반투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20억원 이상이면 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 ○○○○○과, ○○○○○과, ○○과, ○○○○○○소)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5]와 같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일반투자사업 5건에 대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6) ○○시·○○시·○○군·○○군, 2021. 00. 0. ~ 2021. 00. 00.

[표 5] 화순군 자체 투자심사 미실시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억원)

연도	사업명	위치	총 사업비	사업기간	계획수립	예산편성	자체 투자심사 여부	추진상황
계	5개소		160.9					
2020	○면 ○○○호선 확포장	○면 ○○리 일원	27.3	2020.00.~2022.00.	2017.00.00.	2017.1회추경	부	완료
2021	○○○○ ○○○○ ○○○○센터	○○면 일원	20.8	2021.00.~2022.00.	2020.00.00.	2021.본예산	부	완료
2022	2022년 ○○○ ○○○ ○○○○○	○○읍 일원	23.0	2022.00.~2023.00.	2022.00.00.	2022.본예산	부	완료
2022	○○○ ○○○○ ○○조성 지원	○○면 일원 (0농가)	56.8	2022.00.~2023.00.	2022.00.00.	2022.2회추경	부	추진 중
2023	2023년 ○○○ ○○○ ○○○○○	○○면 등 0개면 일원	33.0	2023.00.~2023.00.	2023.00.00.	2023.본예산	부	추진 중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이번 종합감사기간(2023. 3. 29.~4. 6.) 중 군 자체 투자심사를 미실시한 사업별 추진상황을 살펴본 결과 ○면 ○○○호선 확포장공사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여 총 71.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 ○○○○○○조성 지원 등 2건은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로 인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심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패널티 부과를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 별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 완료 후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관련 업무

를 소홀히 한 지방○○사무관 ○○○,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②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을 준수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원활한 자동차교통 소통으로 공중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1]과 같이 관내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화순군 주차장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개소, 대)

연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2020	4,359	25,576	2	39	29	2,984	4,319	22,553
2021	4,871	26,337	2	39	30	3,045	4,830	23,253
2022	4,978	27,428	2	31	31	3,087	4,945	24,31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미실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

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하고,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조성계획 및 군계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¹⁾이 총 8,145건 발생하였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민원과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용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시설기준 미준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는 한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고,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까지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

1) 8,145건(2020년 3,847건, 2021년 1,992건, 2022년 2,306건)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이상 비율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에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 규모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에도 한면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은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2] 및 [별표 1]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명세”와 같이 17개소의 공영주차장 중 8개소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시설기준을 준수하였고, 나머지 9개소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총 40면을 부족하게 설치한 채 운영하고 있다.

[표 2]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장 개소	주차 대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기준 대수	확보 대수	부족 대수
계	17	2,710	81	44	40
시설기준 준수	8	779	24	27	-
시설기준 미준수	9	1,931	57	17	4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노외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미설치 등 유지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경보장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²⁾

따라서 화순군에서는 보행자와 출입차량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경보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실, ○○○○과, ○○○○과, ○○○○과, ○○○○과, ○○○○과, ○○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3] 및 [별표 2] “노외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명세”와 같이 관내 노외 주차장 30개소 중 29개소가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3] 노외주차장 경보장치 설치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개소)

경보장치 설치 대상	개소	경보장치	
		설치	미설치
노외주차장	30	1 (작동)	29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2)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000(2021. 00. 00.)호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앞으로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시정)
- ② 화순군 관내 공영주차장에 시설기준과 현지여건에 맞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1] ~ [별표 2]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공사 구간 내 사용 협의 없이 국·공유지 무단 훼손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훈계대상자 화순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도로이용자 편의 및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주변의 농경지, 가옥 등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1]과 같이 국·공유지가 포함¹⁾된 도로·하천 등 총 2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표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하천 등 공사 추진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사업 건수	도 로		하 천		기 타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사업내용	건수
24	도시계획도로, 군도 등	13	소하천 정비 등	11	-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20.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사업의 특성상 국·공유지가 편입되는 도로, 하천 등의 사업 위주로 추진현황 파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를 거친 인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 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3항 및 제9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 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²⁾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 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³⁾을 듣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하천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 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공사시행계획⁴⁾을 수립하려는 경우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등 20개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위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함(도로·공원·철도·수도 등)

3)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은 국토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봄

4)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인가 신청서에 ①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 지적평면도 ② 실시설계도서 ③ 자금조달계획서 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④ 예정공정표 ⑤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또한 「소하천정비법」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르면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 등 16개 개별 법령에서 정한 허가·인가·면허·승인·신고·결정·협의 또는 지정 등을 위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 관리기관의 의견대로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을 하거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2] 및 [별표]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명세”과 같이 2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구간 내 편입된 국·공유지 총 555필지 341,324㎡ 중 ○○천 ○○○○○○사업 등 15건의 공사에 포함된 371필지 293,072㎡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국·공유지 관리기관⁵⁾과 무상귀속 등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여 2023. 4. 6. 감사일 현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11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

5)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관청 및 전라남도 등

[표 2] 도로·하천 등 공사 구간 내 편입 국·공유지 미협의 현황(2020년 4월 ~ 2023년 2월)

(단위 : m²)

사업 건수	국·공유지 편입 현황		협의 완료		미 협의		무단 훼손 사용 기간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4건	555	341,324	184	48,252	371	293,072	3개월 ~ 5년 11개월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국·공유지 371필지 293,072m²를 무단 훼손·사용하는 등 국·공유 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 사용 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공사 구간 내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무상귀속 등의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며(시정)
- ③ 앞으로 도로·하천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따라 사전에 국·공유지 사용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략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장물(지장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구 정비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 비용을 지급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¹⁾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²⁾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³⁾ 또는 용역⁴⁾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
- 1) 「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 등”이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2)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함
 - 4)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직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함

것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국세청 훈령) 4-0-1 제1항에 따르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소유 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감사원 심사 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5)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물건(지장전주 등) 등을 소유자에게 이전토록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 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⁶⁾⁷⁾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 보상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이전비를 청구할 때에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201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및 [별표] “지장물 이설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총 29개 사업에서 지장전주 287본의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서 ○면 ○○~○○ 확

5) 한국전력공사(성동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청인 세무서장(성동)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청구·수령한 이설 비용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이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사 청구

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00, 2013.00.00.)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 등의 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7) 판례에 따르면(2018.12.19. 선고 2017가합9598) 원고(평택시)는 2017.07.06. 피고(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07.0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660,837,560원을 반환

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은 당해 물건의 소유자(관리자)인 ○○○○공사(○○지사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고, ○○○○○○지구 정비사업 등 25건은 부가가치세(53,049,205원)를 포함하여 ○○○○공사에서 청구한 금액 총 696,689,512원을 그대로 지급하였는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지장물 이설공사비 중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현황(2018년 3월 ~ 2023년 2월)

(단위 : 원)

구분	사업 건수	이설 지장전주 현황		이설공사비(지급금액)			지급기간	비고
		내역 (본)	소유자 (관리기관)	계	공사비	부가세		
계	29	287		696,689,512	643,640,307	53,049,205	2018. 0. ~ 2023. 0.	금전채권 소멸시효 :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지급	25	277	○○○○공사 ○○지사 등	583,541,225	530,492,020	53,049,205		
미지급	4	10	○○○○공사 ○○지사 등	113,148,287	113,148,287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지장물 이전 비용 지급 시 ○○○○공사(○○지사)에 과세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53,049,205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 지급 시 과다 지급한 부가가치세 53,049,205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략

전라남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대한 건축허가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총 194건의 건축허가를 수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¹⁾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²⁾에 따르면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³⁾.

아울러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건축사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에 따른 방화유리창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 [별표] “화순군 방화유리창 미설치 건축허가 명세”와 같이 (주)○○○○ 등 3건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건축사가 관계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방화유리창으로 설계하지 않았는데도 건축허가를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2) 제24조 제12항 신설(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일부개정·시행)

3)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앞으로 건축허가 시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 방화유리창으로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 ② 「건축법」 제54조 등을 위반하여 방화유리창으로 설계하지 않아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건축사 3명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별표] 생 략

4)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전라남도 개선요구

제 목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건축법」 및 「화순군 건축 조례」에 따라 [표 1]과 같이 화순군 건축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총 405회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표 1] 화순군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현황(2021년 7월 ~ 2023년 2월)

(단위: 회)

구분	계	2021. 7. 9. ~ 2021. 12. 31.	2022. 1.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2. 28.
계	405	151	224	30
건축허가	194	74	108	12
사용승인	211	77	116	18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법」 제27조에 따르면 허가권자¹⁾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²⁾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

1) 해당 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위의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건축개발과)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 공고하여 명부³⁾를 작성하고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반드시 해당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허가권자에게 안내 공문을 5차례⁴⁾ 발송하였다.

한편 「화순군 건축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군수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화순군은 2021. 7. 9.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하도록 「화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화순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⁵⁾하면서 2021. 1. 8. 일부개정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화순군 건축 조례」 제18조를 개정하지 않고 업무대행건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표] “화순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위반 명세”와 같이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 총

3) 332명(2021. 7. 9. ~ 2022. 7. 8.), 349명(2022. 7. 9. ~ 2023. 7. 8.)

4) 건축개발과-00000(2021. 0. 00.), 건축개발과-00000(2021. 0. 00.), 건축개발과-00000(2021. 00. 00.), 건축개발과-00000(2022. 0. 0.), 건축개발과-00000(2022. 0. 00.)

5) 제2929호 2022. 3. 30. 일부개정

52명을 총 84회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운영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서 지정하도록 「화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령상 개선)

[별표] 생략

전라남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과)

훈계 대상자 ① 화순군 ○○과 지방○○주사 ○○○

② 화순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사 1,350건을 발주하여 준공 또는 공사 중에 있다.

지방○○주사 ○○○은 2020.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2020년 ○○ ○○○○사업(○○ ○○면) 등 5개 사업¹⁾의 담당 팀장으로 근무중이고, 지방○○주사 ○○○은 2021.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2021년 ○○ ○○사업(○○○○지구)의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1) 2020년 ○○ 유지관리사업(○○ ○○면), ○○읍 ○○○소하천 정비공사, ○○면 ○○소하천 정비공사, ○○면 ○○○리 ○○ 설치공사, ○○면 ○○○천 정비공사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²⁾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³⁾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37조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⁴⁾를 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문화재 보존영향 검토·협의 대상 지역)

가. 국가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까지의 지역

나. 도 지정 문화재

- 주거·상업·공업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의 지역

3) 1.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포획·채취·사육·도살하는 행위,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 등

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등

4) 1.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가.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도지정문화재(기념물 가운데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다. 도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

2.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등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부서와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벗어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 ○○○○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 미이행 공사 명세”와 같이 2020년 ○○ ○○관리사업(○○ ○○면)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가 국보(화순 ○○사 ○○○○○○) 등 6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데도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시행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및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화순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 조성 등 1,050건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¹⁾하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대신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1]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9건 182,930천원의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지 않고 있는데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3. 개발행위 허가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확인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고, 시·군에서는 인·허가증의 교부 시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개발행위허가 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산정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역개발공채 매입 대상 중 미매입 명세”와 같이 총 11건 23,385천원의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다.

4. 개발행위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행정조치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사업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연장이 되도록 미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3] “개발행위 허가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된 농업용 창고 부지 조성 등 총 76건에 대하여 짧게는 9일에서 길게는 393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의견 청취 및 허가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5.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보증기간 경과 등 관리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60조 및 제1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

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행보증금 보증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4]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증권 보증기간 경과 명세”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시 제출된 이행보증증권 중 총 3건(38,346천원)의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짧게는 146일에서 길게는 338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개발행위 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미예치 9건 182,930천원을 예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공채 미매입 11건 23,385천원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76건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연장 또는 취소 등 행정 조치하며, 이행보증금 보증기한 경과된 3건 38,346천원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재예치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4] 생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화순군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2건¹⁾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주사보 ○○○는 2021.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이행실태 점검 등의 업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²⁾

1) ○○○○과 9, ○○○과 3, ○○○과 2, 전남○○청 1, ○○○과 4, ○○○과 1, ○○○과 2

(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르면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³⁾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하여야 하고, 협의권자는 관리책임자 지정 및 착공·준공 통보를 기한내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받고 공사를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재해영향평가 : (면적) 5만㎡ 이상, (길이) 10km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천㎡이상 5만㎡ 미만,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시작한 22건 중 화순군 ○○면 ○○리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 등 15건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지 않고, 17건에 대해서는 착공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7건은 준공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업무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4 및 제6조의5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 2.6.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르면 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

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 사업시행자는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야 하고, 협의권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부적정 명세”와 같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과 등 7개 부서에 통보한 후 화순군 ○○○○ ○○○○시설 부지조성공사 등 14건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지 않아 공사현장에 관리대장이 갖추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로 인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거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 미설치로 개발사업 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량 증가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주사보 ○○○를 훈계하고(훈계)
- ② ○○과 등 7개 부서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후 공사 진행중인 14건의 현장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준공 통보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

행상황을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도록 하며, ○○○○과로 하여금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생 략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산림사업 안전관리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과)

훈계대상자 ① 화순군 ○○○○과 지방○○주사 ○○

② 화순군 ○○○○과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및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표 1]과 같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 총 477건의 다양한 산림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표 1] 화순군 산림사업 현황

계	조림	숲가꾸기	복구	사방	등산로	간선임도	덩굴제거	비고
477	112	272	5	18	29	5	36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주사 ○○는 2020.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 담당자로,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기술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7일 이내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보존·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산림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존·관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화순군은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2022. 8. 16.)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도시숲, 산림토목, 산림병해충방제) 안전관리 부실’로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2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산림사업 총 217건 중 사업시행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7건을 제출받지 않고,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64건을 승인 통보하지 않았으며, 사업 준공 후 안전점검종합보고서 15건도 제출받지 않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산림사업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현황(2022년 4월~2023년 2월)

구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여부		
	계	제출	미제출	계	승인	미승인	계	제출	미제출
계	217	210	7	217	153	64	172	157	15
2022년	172	165	7	172	108	64	172	157	15
2023년	45	45	-	45	45	-	-	-	-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3. 임도사업 설계심사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에 따르면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신설·구조개량·보수)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발주청의 차상급 기관¹⁾에 설계심사를 요청하고, 차상급 기관의 설계심사는 대학교수 또는 1급 산림공학기술자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도서에 의한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차상급 기관인 전라남도(산림휴양과)에 설계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3. 4. 6.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2020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설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1) 시·또는 지방산림청

[표 3] 2억원 이상 임도사업 설계심사 미이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설계심사 이행 여부	비고
계	2건		662,000		
1	2020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2020.00.00.~ 2020.00.00.	417,000	미이행	
2	2021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2021.00.00.~ 2021.00.00.	245,000	미이행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설계심사를 통한 전문가의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임도 개설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화순군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과)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행했던 임도 개설사업 등의 설계도서, 사진 등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8건에서 시공 소홀, 미시공 등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임도 개설사업 등 미시공분에 대한 미회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계	8건			2,848,749		46,760	
1	2020년 ○○○○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2020.00.00.~ 2021.00.00.	화순군○○○○ (○○○)	669,195	- 층따기 미시공 등	4,162	회수
2	2020년 ○○○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2020.00.00.~ 2020.00.00.	진도군○○○○ (○○○)	392,839	- 층따기 미시공 등	9,964	회수
3	2021년 ○○○ ○지구 간선임 도 개설사업	2021.00.00.~ 2021.00.00.	○○○○중앙회 ○○○○○○본부 (○○○)	603,470	- 뒤채움잡석 미시공 등	10,960	회수
4	2020년 ○○○ ○지구 구조개 량사업	2020.00.00.~ 2020.00.00.	신안군○○○○ (○○○)	182,833	- 혼합석 다짐 미시공 등	4,370	회수
5	2022년 ○○○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	2022.00.00.~ 2023.00.00.	화순군○○○○ (○○○)	363,954	- 보조기층부설 다짐 미시공 등	9,794	회수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공사비	지적내용	금액	조치 내용
6	2021년 ○○○ ○사업(○○○○ 지구)	2021.00.00.~ 2021.00.00	○○○○중양회 ○○○○○○본부 (○○○)	204,682	- 공정별 운반 미실시	1,962	회수
7	2021년 ○○○ ○지구 계류보전	2021.00.00.~ 2021.00.00.	(주)○○○○ (○○○)	132,01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 정산 등	2,852	회수
8	2022년 사방사업 (○○읍○○지구)	2022.00.00.~ 2022.00.00	화순군○○○○ (○○○)	299,765	- 강관비계 미시공 등	2,696	회수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화순군○○○○(조합장 ○○○)가 2020. 0. 00.부터 2021. 0. 00.까지 시공
한 2020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669,195천원)²⁾에서 층따기(322m³) 시
공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
사비 4,162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② 진도군○○○○(조합장 ○○○)가 2020. 0. 0.부터 2020. 0. 0.까지 시공한
2020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392,839천원)³⁾에서 층따기(736m³) 시공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9,96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③ ○○○○○○○회 ○○○○○○○본부(대표이사 ○○○)가 2021. 0. 00.부터
2021. 00. 00.까지 시공한 2021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603,470천원)⁴⁾
에서 뒤채움잡석 시공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0,96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④ 신안군○○○○(조합장 ○○○)가 2020. 0. 0.부터 2020. 0. 00.까지 시공
한 2020년 ○○○○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182,833천원)⁵⁾에서 혼합석 다짐
(1,465m) 시공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4,370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⑤ 화순군○○○○(조합장 ○○○)가 2022. 0. 0.부터 2023. 0. 0.까지 시공한

2) 사업규모 : 임도개설 L=2.64km 등

3) 사업규모 : 임도개설 L=2.74km 등

4) 사업규모 : 임도개설 L=3.35km 등

5) 사업규모 : 임도 구조개량 L=1.46km 등

2022년 ○○○○지구 작업임도 개설사업(363,954천원)⁶⁾에서 층따기(301m³) 시공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9,794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⑥ ○○○○○회 ○○○○○본부(대표이사 ○○○)가 2021. 0. 00.부터 2021. 0. 00.까지 시공한 2021년 ○○○○사업(○○○○지구)(204,682천원)⁷⁾에서 기슭막이 기초잡석뒹채움 운반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1,962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⑦ (주)○○○○(대표이사 ○○○)가 2021. 0. 00.부터 2021. 0. 00.까지 시공한 2021년 ○○○○사업(○○○○지구)(126,865천원)⁸⁾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가항목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852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⑧ 화순군○○○○(조합장 ○○○)가 2022. 0. 00.부터 2022. 0. 00.까지 시공한 2022년 사방사업(○○읍○○지구)(299,765천원)⁹⁾에서 박스 강관비계 시공 등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공사비 2,696천원을 과다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① '22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임도사업 설계심사 미이행 및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주사 ○○,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6) 사업규모 : 임도개설 L=1.72km 등

7) 사업규모 : 계류보진 456m³ 등

8) 사업규모 : 계류보진 157m³ 등

9) 사업규모 : 사방댐 설치 1식, 기슭막이 405m³ 등

②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2020 ○○○○지구 간선임도 개설사업 등 8건 사업에서 과다 지급된 46,76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훈계·시정요구

제 목 하수도 정비사업 행정절차 미이행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화순군(○○○○○○소)

훈계대상자 화순군 ○○○○○소 지방○○주사 ○○○

내 용

1. 업무 개요

화순군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별표 1]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명세”와 같이 ○○○○○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16건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지방○○주사 ○○○은 2022. 0. 0.부터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소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한 총괄 업무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 하수도 정비사업 변경인가 절차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인가한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시설면적, 하수관로의 길이 등이 10%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화순군은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 중 하수관로의 길이가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시·도지사 인가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3. 4. 6. 감사일 현재 [표 1]과 같이 ○○○○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2건의 사업이 하수관로 길이가 10% 이상 증가하였는데도 환경부 협의 절차 및 시·도지사 변경인가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다.

[표 1] 하수도 정비사업 변경인가 미이행 현황

(단위 : km)

연번	사업명	사업량(시설용량)			사업기간	비고 (시공사)
		당초	변경	증액 (증감율)		
1	○○○○○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6.0	7.9	증 1.9 (31.67%)	2018.00.00.~ 2020.00.00.	○○○(주)
2	○○○○○ 마을하수도 신설사업	12.4	14.1	증 1.7 (13.70%)	2018.00.00.~ 2022.00.00.	○○○○(주)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하수도 국고 보조금의 사업 내용 부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3.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¹⁾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에 따라 하수관로의 경우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기술진단 대상인 하수관로(340.0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2018년 이전에 준공한 하수관로 340km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103.4km²)만 실시하고 236.6km(69.6%)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하수관로 기술진단 미실시 현황

(단위 : km)

처리구역	연장	기술진단 대상관로			기술진단 실시 여부	비고 (실시)
		합계	분류식	합류식		
계	340.0	340.0	337.4	2.6	실시 L=103.4km, 미실시L=236.6km	
○○읍 처리구역	184.6	184.6	182.0	2.6	실시 69.4km, 미실시 115.2km	(2019년~2021년)
○○○○ 처리구역	10.0	10.0	10.0	-	실시 10.0km	(2020년)
○○○○ 처리구역	3.5	3.5	3.5	-	실시 3.5km	(2020년)
○면 처리구역	20.5	20.5	20.5	-	실시 20.5km	(2020년)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구역	121.4	121.4	121.4		미실시 121.4km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하수관로 : ○○읍 2018년~2022년(69.4km), 2020년(34.0km)

또한 매년도 말에 다음 연도 하수관로 점검계획을 단위 지역별, 월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관리대상 전체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점검, 청소 및 준설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시행으로 공공하수도를 적기에 보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

4.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순군은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 58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현황

(단위 : m³/일)

시설명	읍·면	개소	처리용량	비고
계		58	30,050	
하수종말처리장 ³⁾	○○읍 등 4개 읍면	4	27,800	
농어촌마을하수도 ⁴⁾	○○읍 등 11개 읍면	54	2,250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하수도법」 제15조 및 제65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⁵⁾은 공공하수도⁶⁾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 등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이상인 공공하수도
 4) 농어촌지역 내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공공하수도
 5)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하수도법」 제18조)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또한 「화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하수처리 구역)을 대상으로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면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계상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알려 동시에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하수처리용량이 500m³ 미만인 농어촌 마을하수도 54개소 중 상수도가 보급되는 공공하수도 20개소에 대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별표 2]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운영 명세”와 같이 상수도가 보급되는 농어촌마을하수도 20개소 중 15개소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면 마을하수도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용료 9,616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매년 9,616천원의 하수도 관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등 하수도 요금 재정적자를 가중시키고, 5개 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5.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 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화순군(○○○○○○소)은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표 4]와 같이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 소홀, 미시공한 132,087천원을 감액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 건설공사 미시공 공정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대표자)	총공사비 (도급 + 관급)	지적내용	금액	비고
계	7건			55,159,889	감액 132,087		
1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019.00.00.~ 2024.00.00.	(주)○○○○ (○○○)	26,761,371	- 가시설 물량 조정 (5,119m→5,030m)	16,720	감액
2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21.00.00.~ 2024.00.00.	○○○○○(주) (○○○)	7,488,300	- 간이 흙막이공 물량 조정 (424m→212m)	33,764	감액
3	○○○○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00.00.~ 2024.00.00.	(주)○○○○○○○ (○○○)	4,201,600	- 시공보링 및 실내시험 삭제 (2공→0공)	11,560	감액
4	○○○○○ 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	2022.00.00.~ 2024.00.00.	○○○○○(주) (○○○)	5,026,771	- 기존관 보호공 삭제 (47m→0m)	4,536	감액
5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022.00.00.~ 2024.00.00.	○○○○○(주) (○○○)	3,039,318	- 다짐 장비 변경 (램머→콤팩터)	3,940	감액
6	화순군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	2022.00.00.~ 2024.00.00.	○○○○○○○(주) (○○○)	4,671,948	- 임시오수처리시설 조정 (4개소→3개소)	52,000	감액
7	○○○○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2.00.00.~ 2023.00.00.	(주)○○○ (○○○)	3,970,581	- 관보호공 삭제 (74m→0m)	9,567	감액

자료 : 화순군 제출자료 재구성

① (주)○○○○(대표이사 ○○○)이 2019. 00. 00.부터 2024. 0. 00.까지 시공 중인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6,761,371천원)⁷⁾에서 토질 양호구간 가시설 물량(5,119m→5,030m, 감 89m)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16,720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금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주)(대표이사 ○○○)이 2021. 0. 0.부터 2024. 0. 00.까지 시공 중인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7,488,300천원)⁸⁾에서 과다 계상된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수량(424m→212m, 감 212m)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33,764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금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③ (주)○○○○○○(대표이사 ○○○)이 2021. 0. 00.부터 2024. 0. 0.까지 시공 중인 ○○○○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4,201,600천원)⁹⁾에서 시공보링 및 실내시험(2공→0공, 기존관 교체로 불필요)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11,560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금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주)(대표이사 ○○○)가 2022. 0. 00.부터 2024. 0. 0.까지 시공 중인 ○○○○○ 마을하수도(2단계) 정비사업(5,026,771천원)¹⁰⁾에서 미시공구간 기존관 보호공(47m→0m, 감 47m)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4,536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금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⑤ ○○○○(주)(대표이사 ○○○)이 2022. 0. 00.부터 2024. 0. 00.까지 시공 중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3,039,318천원)¹¹⁾에서 다짐 장비(램머→콤팩터)를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3,940천원의 설계변경 금액이 필요한데도

7) 사업규모 : 하수관로 L=34.0km 및 배수설비 770가구 정비

8) 사업규모 : 하수관로 L=11.3km 및 배수설비 276가구 정비

9) 사업규모 : 하수관로 L=4.0km 정비

10)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185m³/일 및 하수관로 L=2.9km

11)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개량 1,000m³/일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⑥ ○○○○○○(주)(대표이사 ○○○)가 2022. 0. 00.부터 2024. 0. 00.까지 시공 중인 화순군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사업(4,671,948천원)¹²⁾에서 임시오수처리시설 재활용에 따른 수량(4개소→3개소, 감 1개소)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52,000천원의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고 있다.

⑦ (주)○○○(대표이사 ○○○)이 2022. 0. 00.부터 2023. 0. 00.까지 시공 중인 ○○○○ 하수관로 정비사업(3,970,581천원)¹³⁾에서 미시공구간 관보호공(74m→0m, 감 74m)을 변경하지 않아 공사비 9,567천원의 설계변경 감액이 필요한데도 2023. 4. 6.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을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화순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화순군수는

- ① 「하수도법」 등에 따른 하수도 정비사업 변경인가 미이행, 공공진단 일부 미 실시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일부 미부과 등의 총괄 하수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지방○○주사 ○○○을 훈계하고(훈계)
- ②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 사업에 과다 계상된 132,087,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별표 1] ~ [별표 2] 생략

12)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90m³/일 및 하수관로 L=0.5km
13) 사업규모 : 하수관로 L=4.840km 및 배수설비 123가구 정비